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315-01



인권보도준치제정을 위한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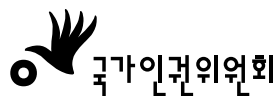
일시 : 2011. 7. 29.(금) 14:00~16: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

인권보도준칙제정을 위한 세미나

일시 : 2011. 7. 29.(금) 14:00~16: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



인권보도준칙 제정을 위한 세미나 일정과 목차

■ 세미나 일정

사회	○ 신경민 MBC 해설위원
----	----------------

주제발표	- 인권보도준칙 추진경과와 초안 ○ 김주연 인권보도준칙위원장(전 한국기자협회장 · 한국일보)
------	--

지정토론	○ 서수정 인권위 홍보협력과장 언론시민단체 사전 검토 의견 취합발표 ○ 심재익 서울신문 사회부 부장 ○ 심석태 SBS 인터넷뉴스 데스크 ○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김유진 민연련 사무처장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	--

종합토론	○ 양재규 변호사, 언론중재위 정책연구팀장 ○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최영목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

■ 목차

1장_ 주제발표-인권보도준칙 추진경과와 초안	05
2장_ 언론시민단체 등 검토 의견	35
부록_ 기자협회보 연재기사 ²⁾	65

1)_ 언론인권센터, 방송독립포럼(이상 전반, 인격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여성), 용인이주노동자쉼터(이주),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지킴이 강사단(노인), 서울YMCA 어린이영상문화연구회(어린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성소수자), 참언론대구시민연대(지역 언론) 등

2)_ 한국기자협회 · 국가인권위원회 공동기획-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권보도가 만든다!



인권보도준칙제정을 위한 세미나

주제 발표

인권보도준칙 추진경과와 초안

김주언

국가인권위원회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위원회 위원장

인권보도준칙 추진경과와 초안

- 국가인권위원회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위원회 -

1. 추진배경과 목적

-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에서 언론의 역할 중요
- 인권보도를 위한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지침 마련
- 언론 종사자와 입문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관련 교육 자료로 활용

2. 추진경과

□ 인권보도준칙 제정 · 홍보사업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 한국기자협회 양 기관 보고 (2011. 4. 7.)
- 실무TF 구성 : 인권보도 공동기획취재팀 (3인)

□ 「기자협회보」공동기획보도

- 기획명 : 한국기자협회 · 국가인권위원회 공동기획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권보도가 만든다!
- 보도 일자 : 4. 27. ~ 6. 8. 총 5회
- 보도 분량 : 매호 1개면 특집(200자 원고지 35매)
- 보도 내용 :

회차	메인 기사(분야별 보도실태)	박스 기사
1회 (4.27.)	〈장애인권 보도〉 장애보다 '사람'에 주목하자!	1. 외국의 가이드라인과 법률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모니터단 백수정 팀장 인터뷰
2회 (5. 4.)	〈성평등 보도〉 남성과 여성 다르지만 같은 인격체	1. 광고속 여성과 남성 2. 여성민우회 윤정주 소장 인터뷰
3회 (5.18.)	〈이주인권 보도〉 우리와 다르다고 차별할 수 없다	1. 다문화 사회 정책과제 2. 용인이주노동자쉼터 고기복 대표 인터뷰
4회 (6. 1.)	〈노인, 어린이, 성소수자 보도〉 나이 · 성적지향 지우면 사람이 보인다	1. 노인인권지킴이단 박용기 대표 인터뷰 2. 서울YMCA 어린이모니터단 안수경 간사 인터뷰 3. 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채운 대표 인터뷰
5회 (6. 8.)	〈인격권 보도〉 알권리 vs 인격권 사회적 합의 필요	1. 언론중재위 양재규 변호사 인터뷰 2. 언론인권센터 최성주 상임이사 인터뷰

- 공동취재팀 : 김성후(기자협회보 기자), 김언경(방송독립포럼 사무국장), 박광우(인권위 홍보협력과 사무관)
- ※ 공동기획 종료 후 '인권보도준칙 실무TF' 로 전환

□ 「기자협회보」 인권보도 공동캠페인 광고

- 광고 게재 현황

게재일	지면	색도
2011. 4. 27.	1면	컬러
2011. 5. 4.	2면	흑백
2011. 5. 11.	1면	컬러
2011. 5. 18.	1면	컬러
2011. 5. 25.	2면	흑백

- 게재 광고 디자인

한국기자협회 · 국가인권위원회 공동기획 캠페인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권 보도가 만든다

Who

How

What

5W1H

Why

+

1H

human

When

Where

5W1H는 기사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여섯가지 요소를 말한다.
여섯가지 요소는 누가(Who),무엇을(What), 언제(When), 어디서(Where), 왜(Why), 어떻게(How)이다.
여기에 모든 사람(Human)을 존중하는 인권의 관점을 더하자.

□ 「인권보도준칙위원회」 구성 · 운영

- 역할

- 인권보도준칙(안) 초안 마련
- 인권보도준칙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인권보도준칙(안) 확정

○ 준칙위 구성

- 원칙 : 인권위와 기자협회 각 3인 이상 추천하여 구성
- 명단

-
- 김주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자문위원(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 한국일보)
 - 신경민 MBC 해설위원
 -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장)
 - 최영목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서수정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장

※ 간사 : 박광우(인권위 홍보협력과)

○ 활동 경과

- 6.24.(금) : 1차 회의(상건례, 준칙 초안 검토와 세미나 준비)
- 7. 8.(금) : 2차 회의(준칙 초안 심의, 세미나 계획 확정)
- ※ 회의 전후 검토안에 대한 이메일 의견 교환
- 8. 5.(금) : 3차 회의(예정)

3. 향후 계획

○ 인권 보도 준칙 확정

- 양 기관 보고(기자협회, 인권위 상임위원회)
- 확정 : 국가인권위원장, 한국기자협회장 서명식

○ 인권 보도 준칙안 홍보

- 한국기자협회보 게시(지면 사정을 감안하여 수시)
- 인권 보도 준칙 수첩 제작 배포(현직 기자 대상)

○ 인권 보도 준칙안 교육

- 언론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반영 등

4. 인권보도준칙(안) 초안과 주요 분야별 실천 매뉴얼: 붙임

인권보도준칙(안)

■ 전문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는다. 언론은 이를 위해 인권문제를 적극 발굴·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형성에 앞장선다.

언론은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아울러 '다름'과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언론은 인권의 증진이 기본적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이에 따라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 총강

1. 언론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2. 언론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원칙을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적용한다.
3. 언론은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신장을 위해 힘쓴다.
4. 언론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그들이 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도적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
5.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
6. 언론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한국기자협회의 자살보도권고기준을 준수한다.
7. 언론은 인권교육매체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한다.
8. 언론은 오보 등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한 경우 솔직하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 주요 분야별 요강

제1장_ 민주주의와 인권

1. 언론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표현을 자제한다.

- 가. 왕조시대에 사용했던 권위적인 용어와 국민을 하시하는 용어.
- 나. 사회 각계 권력층을 지나치거나 특별하게 예우하는 용어.

2. 언론은 특정집단이나 계층에게 편향적이거나 차별적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가. 특정 정치인(집단)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용어.
- 나. 노사관계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나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는 표현.
- 다.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빈부격차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용어.
- 라.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하는 용어.

제2장_ 인격권

1.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가. '공인' 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나. '공인' 의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내용과 관련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 다. 개인의 질병이나 사인에 대해 병명 공개에 주의한다.

2. 범죄사건의 경우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나. 용의자나 피의자, 피고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 다.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신상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않는다.
- 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한다.
- 마.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세한 상황 묘사를 하지 않는다.

제3장_ 장애인 인권

1. 언론은 장애인들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
-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속담구.
- 다. 장애 부위와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표현.
- 라. 장애인을 보장기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한 표현.
- 마. 동정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
-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나. '미담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항상 노력한다.

제4장_ 성평등

1. 언론은 성별과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가. 전문직 여성들의 경우 '여류작가' 처럼 여성을 예외인 것처럼 만드는 표현.
- 나. '미망인' 등 여성만을 지칭하거나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여성 또는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
- 다.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
- 라. 양성의 성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화하는 표현.
- 마.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직업을 하나의 성으로 지칭하는 용어.

2. 언론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가.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표현.
- 나.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키는 사진이나 영상.

제5장_ 이주자와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자격, 국적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다.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동화?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는 미담중심

보도를 자제한다.

라. 이주민을 한국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평가하여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동정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2.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가. 체류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 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는 용어.

나. 외국인노동자 등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전염병 원인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

다. 외국인 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어눌한 한국어 표현 등에 주목한 웃음거리 묘사.

제6장_ 노인, 어린이, 청소년 인권

1. 언론은 노인을 사회적 부담이 아닌 독립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정책적·제도적 해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나. 노인을 지나치게 의존적 존재로 부각시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지 않는다.

다. 시설 생활 노인 등의 인권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인권침해를 감시한다.

2.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는다.

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해와 권리를 단지 그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지 않는다.

나. 어린이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지나친 선정적·폭력적 묘사를 자제한다.

다. 불우한 환경으로 주변의 도움이나 후원을 받는 경우 어린이나 청소년의 얼굴, 성명 등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7장_ 성적 소수자(or 성소수자) 인권

1. 언론은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은 표현.

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라.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표현.

2.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적 병리현상과 연결짓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를 정신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

나. 에이즈 등 특정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현상과 연결짓는 표현.

주요 분야별 인권보도준칙 실천 매뉴얼(안)

제1장_ 민주주의와 인권

〈준칙〉

1. 언론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표현을 자제한다.

- 가. 왕조시대에 사용했던 권위적인 용어와 국민을 하시하는 용어.
- 나. 사회 각계 권력층을 지나치거나 특별하게 예우하는 용어.

〈실천 매뉴얼〉

구 분	사 례
왕조시대에 사용했던 권위적인 용어	- '통치권자', '영수회담', '하마평' : 정치권을 권위적으로 바라보는 표현
국민을 하시하는 용어	- '지도층', '상류층', '중류층', '특권층' : 국민을 계층별로 분류하는 표현
	- '접견', '읍소', '호소', '진언' : 국민을 하시하는 태도가 들어간 표현
사회각계 권력층을 지나치거나 특별하게 예우하는 용어	- '만찬을 베풀다', '금일봉하사' : 일상행위를 특별 대접한 사례
	- '물리적 충돌' : 정치권의 폭력상황을 우대하여 표현한 사례
	- '단행', '결행', '결단' : 권력층의 통상적인 행위를 특별 대우한 사례

〈준칙〉

2. 언론은 특정집단이나 계층에게 편향적이거나 차별적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가. 특정 정치인(집단)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용어.
- 나. 노사관계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나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는 표현.
- 다.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빈부격차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용어.
- 라.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하는 용어.

〈실천 매뉴얼〉

-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을 자제한다.

구 분	사 례
특정 정치인(집단)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용어	- ‘만년야당’ : 지배적인 정치집단이 다른 정치집단을 무기력하게 묘사하는 데 동조한 사례
	- ‘공권력 투입’ : ‘시위진압’ 또는 ‘경찰 투입’ 을 정당화한 사례
	- ‘실력저지’, ‘실력행사’, ‘물리적 저지’ : ‘몸싸움 의사진행 저지’ 로 바꿔 사용.
	- ‘비대가성 성금’, ‘촌지’, ‘떡값’ : ‘뇌물’ 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
	- ‘빨갱이’, ‘급진세력’ : 특정 집단의 이해와 결부될 수 있는 표현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빈부격차를 정당화하는 표현	- ‘달동네’, ‘명품’, ‘고급’
	- ‘허름한 옷차림의’, ‘노동자 풍의’, ‘외제 브랜드 옷을 입은 호감형의’ 등
기업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일반화하여 사용하는 표현	- ‘고객’ ‘증정’ ‘사은품’ ‘소비자’ 를 기업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사례
특정지역을 비하하거나 지역간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	- ‘촌사람’, ‘촌뜨기’, ‘촌스럽다’, ‘지방(대학)’ :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
	- ‘서울이(도) 아닌’, ‘서울에 올라온다(상경)’, ‘서울에서 --km 떨어진’, ‘대학로’ (전국적으로 많은 지명임), ‘여의도의 -- 크기’ : 서울 중심적 표현
	- ‘멍청도와 핫바지’, ‘보리 문둥이’ :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

- 노사관계나 파업관련 보도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¹⁾에 주의한다.

구 분	사 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사측과 정부, 경찰 입장을 대변하거나 불법성을 단정하여 보도한 사례 (합법파업임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의 불법성 논란을 외면)	고용노동부 유성기업 파업 불법 규정(○ ○신문, 2011.5.23.)
	〈사설〉부품업체 알박기식 파업엔 단호 대처하라(○ ○신문, 2011.5.23.)
	태업·파업 매년 되풀이…회사 압박해 ‘타임오프’ 도 무력화(○ ○신문, 2011. 5.24.)
	최중경 “연봉 7천만원 받는 회사가 파업을…”(○ ○통신, 2011. 5.23.)
‘귀족노조의 이기적 파업’ 이란 사측의 일방적 주장을 대변한 사례	유성기업은 귀족노조? 연봉 살펴보니(○ ○신문, 2011.5.24.)
	“연봉 7천만원 넘는데 파업” …현대차 부품사 5천곳 멈출 위기(○ ○신문, 2011.5.23.)
	어느 3차 차부품 협력사 CEO “연봉 2200만원 우리 직원도 파업않는데…”(○ ○신문, 2011. 5.24.)

1)_ 신문보도는 ‘○○신문’, 방송보도는 ‘○○방송’, 통신보도는 ‘○○통신’ 으로 익명표기한다.(이하 동일)

구 분	사 례
파업으로 인한 업계의 타격만 집중적으로 부각한 불공정 사례	“5월말까지 파업땀 완성車 5만대 생산차질”(○○통신, 2011.5.23.)
	“유성기업, 열흘 이상 파업시 1조8천억 손실”(○○신문, 2011.5.24.)
	민노총 부품사 파업에…한국車 생산 중단 위기(○○신문, 2011.5.23.)
	〈자동차업계 ‘올스톱’ 위기〉 “민노총의 전략적 파업…분규 확산 우려”(○○신문, 2011.5.24.0)
노사간 충돌만 지나치게 부각한 사례	한진중공업 노조-용역 충돌…20명 부상(○○방송, 2011.6.12.)
노조 파업 관련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결정 사례	〈파업으로 열차 멈춘 그날 어느 고교생 꿈도 멈췄다〉 20분 늦게 도착, 서울대 면접 볼 기회 잃어(○○신문, 2009.12.4.) * 면접에 늦어 불합격한 것과 철도노조 파업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는지 밝혀진 바 없다는 취지의 결정

제2장_ 인격권

〈준칙〉

1.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가. ‘공인’ 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공인’ 의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내용과 관련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다. 개인의 질병이나 사인에 대해 병명 공개에 주의한다.

〈실천 매뉴얼〉

- 다음과 같은 보도 사례는 주의한다.

구 분	사 례
당사자의 동의 없는 프라이버시권 침해 사례	〈탈북소년 ○○이 “올해는 외롭지 않아요”〉(○○신문, 2010.5.6.) : 2007년 할아버지와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12세 소년이 부모 없이도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소년의 실명, 재학중인 학교명, 북한에서 겪었던 과거사 등을 자세히 다루어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사가 위협 받은 가능성이 있고 소년의 보호자인 할아버지의 동의가 없었음. 언론중재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인정하여 1,500만원 배상 결정.

구 분	사 례
<p>당사자의 동의 없는 프라이버시권 침해 사례</p>	<p>〈암매장 살인사건〉(○○방송, 2010.3.8.) : 방송에서 경찰이 암매장된 살인사건 피해자의 사체 발굴 장면을 보도하면서 고인의 생전 모습을 담은 사진과 가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개되고, 옷가지와 커튼으로 싸여있는 사체의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어 유족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사생활이 침해되었음. 언론중재위는 보도 자체의 공익성(흉악범죄의 재발 방지, 경각심 고취)은 인정되지만 사체 발굴 장면을 보도하면서 유족 측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하여 2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하고 동일 방송 프로그램에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유감 표명하도록 결정.</p>
<p>당사자 동의없는 초상권 침해사례</p>	<p>〈집은 많은데 갈곳이 없네〉(○○신문, 2010.1.16.) : 마을버스를 기다리며 담벼락에 있는 전단지를 보고 있었을 뿐인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촬영해서 마치 하숙집을 구하지 못해 근심하고 있는 여대생인 것처럼 보도. 100만원 배상 합의 성립.</p> <p>〈춥다 추워〉(○○신문, 2010.11.29.): 본격적으로 겨울 추위가 시작된 날 아침 시민들이 두터운 목도리와 점퍼로 중무장을 하고 잔뜩 움츠린 채 출근하고 있다는 기사에 사전 동의도 없이 사진을 촬영해 보도하여 이를 본 직장 동료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음. 50만원 배상 합의 성립.</p> <p>〈소비패턴 바꾸는 5만원권〉(○○신문, 2010.9.20.): 추석 연휴를 3일 앞두고 백화점에서 쇼핑중이었는데 사전 동의도 없이 촬영하여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이 침해되었음. 50만원 배상 합의 성립.</p>
<p>당사자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속임수를 쓰거나 동의를 범위를 벗어난 초상 사용으로 문제된 사례</p>	<p>〈공포의 통과의례〉(○○방송, 1998. 1.13. 서울고법 판결): 성악과 대학생 4명은 방송사에서 신세대들의 생기발랄하고, 재미있고, 단합된 모습의 신입생 환영회 모습을 취재하겠다고 해 수락했는데 실제 방송된 내용은 신입생 환영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조명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원, 방송사에 도합 1천6백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p> <p>〈뭇된 아이 매인가? 치료인가?〉(○○방송, 2009.5.19. 서울남부지법 판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있는 두 아이의 어머니는 이를 사회문제화하고 아이들의 치료를 돕겠다는 방송사의 요청으로 취재에 동의하여 보도됐으나 8개월 후 2차례에 걸쳐 교양프로그램과 뉴스 프로그램에 일부 편집된 영상이 무단으로 방송됐다. 이에대해 언론조정신청을 통해 500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관련 자료를 완전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반년 뒤 뉴스 프로그램에 10초 정도 아이의 모습이 담긴 자료화면이 또 방송되어 소송 끝에 손해배상금으로 도합 500만원 지급 판결.</p>
<p>‘공인’의 초상을 관련없는 보도에 사용한 사례</p>	<p>〈호화 결혼식 보도 사건〉(○○방송, 1996.6.18. 서울고법 판결): 수백만 원짜리 웨딩드레스가 유행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도입부에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 대표로 참석한 바 있어 세간에 널리 알려진 임수경 씨의 결혼식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냄. 법원은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여 1천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p>

〈준칙〉

2. 범죄사건의 경우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나. 용의자나 피의자, 피고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 다.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신상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않는다.
- 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한다.
- 마.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세한 상황 묘사를 하지 않는다.

〈실천 매뉴얼〉

- 다음과 같은 보도 사례는 주의한다.

구 분	사 례
범죄보도 관련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사례	〈동생이 빛 독촉하자 살해〉(○○신문, 2003.8.):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단정적인 표현의 제목을 사용해 보도했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18개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통해 건당 평균 3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 결정.
	〈2인조 대학생 강도·강간범 검거〉(○○신문, 2010.3.19.): 공인이 아닌 형사 사건 피의자의 성,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교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선상 결사 항전〉(○○방송, 2010.3.5.): 해상 단속반이 암컷 대게잡이 어선을 적발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선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없이 방송하여 초상권 침해. 언론중재위 250만원 손해배상 조정 합의.
	〈골프장 사장 납치범 공개수배〉(○○방송, 2008.4.3. 서울남부지법 판결): 인천공항 앞 도로에서 발생한 모 골프장 사장 납치사건에 대해 경찰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이자 A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해 보도한데 대해 법원은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2천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자살사건과 관련 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사례	〈모자가 숨진 채 발견 생활고 비관 자살추정〉(○○신문, 2010. 7.16.): 자살자의 성, 나이와 함께 주소지를 리 단위까지 적시하여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여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대학병원 교수 자살 왜?〉(○○신문, 2010.3.5.): 개인적인 채무와 우울증 등이 자살원인이었으나 마치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것처럼 보도하여 언론중재위로부터 정정보도와 함께 유족측에 100만원의 손해 배상금 지급 조정 성립.

제3장_ 장애인 인권

1. 언론은 장애인들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속담구.

다. 장애 부위와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표현.

라. 장애인을 보장기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한 표현.

마. 동정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

〈실천매뉴얼〉

1. 다음과 같은 장애인 비하 용어는 올바른 표현을 사용한다.

장애인 비하 용어	올바른 표현
정상인(장애인의 반대)	비장애인
애자, 장애자, 불구자, 지체부자유자, 병신, 불구, 폐질자	장애인
앉은뱅이	지체장애인
절름발이, 절뚝발이, 찢뚝발이, 찢뚝이, 찢따, 반신불수	지체장애인
외다리, 외발이, 외팔이, 곰배팔이	지체장애인
조막손, 육손이	지체장애인
병어리, 귀머거리, 아다다, 말더듬이, 아자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장님, 소경, 애꾸, 봉사, 맹자, 애꾸, 애꾸눈, 외눈박이, 사팔뜨기, 사팔	시각장애인, 저시력장애인
곱추, 곱추, 곱사등이	지체장애인
정신박약아, 정박아, 등신, 또라이, 백치, 바보 천치, 얼간이, 멍	지적장애인
미치광이, 정신병자, 미친사람	정신장애인
땅딸보, 난쟁이	지체장애인(저신장장애)
언청이, 언청쌤, 께보	언어장애인
배넛병신	선천성 장애인
흑부리	안면장애인
문둥이, 나병환자	한센인

※ 〈참고〉 장애 분류와 정확한 명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척추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직장, 대장, 소장이나 방광자율신경 등의 손상으로 인한 배설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자폐성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

2. 다음과 같은 보도 사례는 주의한다.

구 분	사 례
잘못된 장애인 반대말 표현	"듣지 못하는 성심야구부 선수들의 집중력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정상인들에 비해..." 〈청각장애 충주성심야구부 '꿈의 1승' 도전〉(○○통신 2011.3.24.)
	"장애인 가구의 주거 환경이 정상인 가구보다 ..."
	〈장애인 주거비 부담 정상인보다 커〉(○○신문 2010.7.21.)
	"지난 2005년 한양대 재학시절에는 정상인 친구들과 함께..." 〈사랑 그리고 희망 - 2010 대한민국 리포트/김동원씨 '불굴의 재할 도전기'〉(○○신문 2010.9.1.)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하는 속담 인용	"휴대전화 업체·이통사, 출고가 '꿀먹은 병어리'"(○○신문, 2011.3.30.)
	"보령지역 축산농가, 병어리 냉가슴, 한우가격 하락으로 근심"(○○통신, 2011.2.22.)
	"수쿠크법 논란은 장님 코끼리 만지는 꼴"(○○통신 2011.4.6.)
	〈인천대교 CCTV '눈 뜬 장님'〉(○○일보 2010.7.5.)

구 분	사 례
장애를 비정상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	〈독해는 되는데 작문을 못해요-절름발이 영어는 이제 그만!〉(○○신문 2011.3.28.)
	"저지는 중국이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 절름발이 국가라는 관점을 버리라고 권한다." 〈중의 성장… 美는 막지 말고 즐겨라〉(○○신문 2011.1.21.)
	"자라나는 세대를 역사의 '청맹과니(눈뜬장님)' 로 만들려는가." '청맹과니' 역사 교육〉(○○신문 2010.2.16.)
장애와 질병을 혼동한 표현	"장애를 앓고 있는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장애인이라고 무시해"…30대 여성 연쇄방화〉(○○방송, 2011.4.10.)
	"경찰은 박씨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지적장애女 성폭행 파렴치한 2명 구속〉(○○신문 2011.4.4)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이균도 군과 아버지 이진섭 씨가 …" 〈장애인이 행복하게…"父子간 부산~서울 '희망 걷기'〉(○○신문2011.3.28)
	"조씨 남매는 물론 어머니도 지적장애와 신체장애를 앓고 있어 …" 〈같은 마을의 장애 남매를 상습 성추행한 60대〉(○○신문 2011.3.24)
장애 보조도구 이용에 대한 잘못된 표현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 어머니(85)와 피난중인 주부(61)는 …"〈조용히 참던 일본인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신문, 2011.3.29.)
	"자신도 세 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난 뒤 휠체어에 의존하는 …" 〈기자의 눈/대사 없는 몸짓 연기 2시간 30분…애인 극단의 감동〉(○○신문 2011.3.23.)
	"하루 10시간 이상 수업과 업무를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지만 …" 〈'따뜻한 동행' 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신문 2010.11.11.)
	"이 다리는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 …" 〈휠체어 대신 로봇다리로 '진짜 걷는다'〉(○○신문 2010.7.16.)
장애인을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표현	"이 교수는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최영씨 얘기를 쓴 게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묵 서울대 교수, 입으로 켜고 끌 수 있는 IPTV 개발〉(○○신문 2011.04.11.)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전신마비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 〈장애 극복 '한국판 호킹', 9년만에 감독의 졸업장〉(○○방송, 2011.02.28.)
	"지적장애 3급으로 일반인처럼 몸이 성치 않지만 …" 〈접시 뒹는 장애인 봉사자 박병조씨〉(○○통신, 2010.4.24.)
	"성치 않은 몸으로 7년째 등산로를 정비하는 등 …" 〈장애불구 7년째 홀로 등산로 정비 '여규동씨'〉(○○통신, 2011.1.9.)

〈준칙〉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나. '미담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항상 노력한다.

〈실천 매뉴얼〉

- 장애인 인권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구 분	사 례
장애인 또는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 버리기	“장애는 어둡고 부정적인 것” : ‘사람’ 이 아닌 ‘장애’ 를 강조하여 그가 가진 인간적인 측면을 외면하고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의존적인 존재’ 등 부정적 고정관념을 갖게 할 우려
	“장애를 극복하고 불굴의 의지로” : ‘어떤 특정한 기능의 결여로 인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라는 부정적 고전관념에서 탈피해 ‘어떤 특정한 기능을 제외하곤 가능한 일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 이란 인식 중요
	“장애를 잘 안다” (사실은 잘 알지 못하면서 상상한 것): 해당 장애 상태와 그를 둘러싼 장애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설득력 있는 보도 가능
	“장애를 고치라” : 장애는 질병이 아니다. 재활을 통해 불편함을 개선시킬 수 있으나 완치나 극복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은 적절치 않음.
	“장애인이 특별한 능력도 없어” : 특정 유형의 장애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는 식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평범한 장애인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음.
	“청순가련, 순종, 비련의 여성장애인” : 일반적인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나타나고 평범한 여성장애인의 삶을 더욱 소외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장애인의 인권 존중하기	장애인 비하하지 않기: ‘신체는 못 쓰지만 정신만은 멀쩡하다’ , ‘장애를 입어도 밝게 산다’ , ‘비참하지만 의연하다’ 라는 식의 장애를 부각하고, 동정어린 시각을 유도하는 감성적 표현과 ‘사지 멀쩡한데...’ 와 같은 ‘장애인의 특성’ 을 빗대어 부정적 비교나 상대의 열등을 드러내는 상투적인 표현 등
	장애를 비장애인 미담을 위한 소도구로 여기지 않기: 장애인 복지는 그들의 당연한 권리이지 시혜적으로 베푸는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내용을 미담으로 보도하는 사례

구 분	사 례
장애인의 인권 존중하기	장애인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 지키기: 장애인의 언론노출 시 자기 결정권 존중하기, 촬영을 허락했다 하더라도 영상이나 기사에 게재되는 사진에서 장애인의 인권감수성 감안하여 신중하기 다루기, 장애 부위를 부각하거나 사생활 침해 등 장애인 인격권 지키기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차별 성폭력 보도에 보다 신중하기: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 차별구조에서 고립되기 쉽고 가족폭력과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권확보와 성인식 개선을 위한 보도 필요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장애인의 행복추구권 보장하기: 장애인을 신체적 결함이나 사회활동의 제한 등을 부각하여 장애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는 존재로 묘사하거나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는 초인적 존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과 꿈을 갖고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그자체로 인식할 필요
	장애인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하기: 장애인을 사회적 열등생 혹은 결함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능력을 펼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진 사회 활동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기
	장애인을 활동적인 사회 참여자로 묘사하기: 장애인은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 갖기
	장애를 감성이 아닌 사회제도 차원에서 접근하기: 장애인의 문제나 차별은 잘못된 사회의 시선, 불평등한 제도나 정책 등 불합리한 사회구조와 관계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 차별을 불러오는 사회적 제도 차원의 접근 필요
	특정한 날에만 장애인 이슈를 다루지 않기: '장애인의 날' 등 특정한 날짜만 장애인 이슈를 다루지 않고 늘 장애차별을 위한 발굴도보를 찾고 장기적인 기획 보도를 고민할 필요

제4장_ 성평등

〈준칙〉

1. 언론은 성별과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 전문직 여성들의 경우 '여류작가' 처럼 여성을 예외인 것처럼 만드는 표현.

나. '미망인' 등 여성만을 지칭하거나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여성 또는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

다.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

라. 양성의 성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화하는 표현.

마.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직업을 하나의 성으로 지칭하는 용어.

〈실천 매뉴얼〉

- 다음과 같은 보도 사례는 주의한다.

구 분	사 례
성차별적 사고를 반영한 용어 사용	"미망인인 고일신 여사가 비에 현화하고 있다." 〈농민문학가 이무영 기리는 무영제 열려〉 (○○통신 2011.4.20.)
	"출근했다가 집에 못 돌아왔으니 꼭 집에 들렀다 가야한다는 미망인의 뜻에 따라..." 〈운구가 떠난지 3시간 후에 도착한 편지에 두 번 운 경찰관들〉(○○신문 2011.4.7.)
	"부익재 광복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사진)은 22일 고(故) 이운강 애국지사의 미망인인 김춘색 회원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 〈애국지사 미망인 방문〉(○○신문 2010.12.23.)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한 표현	〈고교생이 여학생·여교사 폭행하고... 흡연학생 체벌한 교사 중징계받고〉(○○신문 2011.4.21.)
	〈"술집서 알바 사실 왜 알렸나" 술 먹고 여교사·학생에 폭력〉(○○신문 2011.4.20.)
	〈술 취한 여교생, 학교에서 여학생·여교사 폭행〉(○○신문 2011.4.20.)
	〈검찰 첫 전문 여검사 3층사 탄생〉(○○신문 2011.2.20.)
	〈첫 전문검사에 '여검사 삼총사'〉(○○신문 2011.2.8.)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표현에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	"〈타이거 우즈 내연녀 우치텔 "우즈와 관계, 후회한다〉(○○신문 2010.11.17.)
	〈충북 시장군수들 "'얼굴마담용' 행사 안간다〉(○○통신 2010.12.5.)
여성 이 남성보다 한 수 아래 라는 고정관념을 반영한 표현	"또 여성 대변인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국회의장과 홍사덕 의원,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유종필 국회 도서관장 등은 촌철살인(寸鐵殺人)의 논평으로 당대 '명 대변인' 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최근엔 명 대변인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이 여론이다. 이를 두고 "능력보단 외모 위주로 여성 대변인을 임명하는 경우가 있어 대변인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국회 여성대변인의 명암〉(○○신문, 2011.1.21.)
가부장제의 전통적 여성의 '역할' 과 '지위' 를 강조하는 표현	〈김여사,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내조외교'〉 (○○통신 2011. 3.14.)
	〈'내조 외교'에 나선 퍼스트 레이디들〉(○○방송, 2010. 11. 12.)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표현	"물가에 장보기가 겁난다는 주부들 많으시죠" 〈장보기가 겁나요〉(○○방송, 2010.10.5.)

구 분	사 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표현	“요즘 장보러 나온 주부들은 너무 뽀 물가 때문에...”(○○방송, , 2010.10.7.)
	〈창업으로 '이모작'〉(○○방송,, 2010.10.2.)
	* 일하는 노년의 사례자가 전부 남성노인만으로 구성)

〈준칙〉

2. 언론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가.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표현.
- 나.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키는 사진이나 영상.

〈실천매뉴얼〉

- 다음과 같은 보도 사례는 주의한다.

구 분	사 례
선정적이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	〈유이, 쇼핑 포착 '원조 꿀벅지+글래머스 라인' 명동시내 들썩〉(○○신문, 2011.4.25.)
	〈'꿀벅지' 유이, 촬영장 직찍서 빛나는 무결점 각선미〉(○○신문, 2011.4.20.)
	〈'원조 꿀벅지' 유이, 8등신 무보정 현장사진 '눈길'〉(○○신문, 2011.4.20.)
	〈유이, '봄처녀' 변신하며 꿀벅지 과시〉(○○신문, 2011.4.20.)
	〈애프터스쿨 유이, '원조' 꿀벅지 드러낸 티저 공개〉(○○신문, 2011.4.20.)
	〈'이민정 도플갱어' 조민서, 베이글녀 대열 동참〉(○○신문, 2011.4.21.)
	〈'반짝반짝' 한지우. 웨딩드레스 입고 '베이글녀' 자태 뽐내〉(○○신문, 2011.4.20.)
	〈박하니 '쭉쭉빵빵 미녀 여기 있어요'〉(○○신문, 2011.3.2.)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는 표현	〈대중문화의 신권력 아이돌의 빛과 그림자〉(○○방송, 2010.10.1.): 걸그룹을 주요 볼거리로 과도하게 노출시킨 카메라 시선
	〈30%가 성희롱〉(○○방송, 2010. 10.6.): 승무원들이 성희롱을 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스커트를 입은 승무원의 다리를 툴 다운으로 부각
	〈청량음료와 전쟁〉(○○방송, 2010.10.10.): 미국에 비만인이 많다는 것을 설명하며 여성의 엉덩이를 과도하게 부각

※ 〈참고〉 성차별적 언어표현의 유형

구분	중간분류	소분류	예시
가. 성별언어 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①한 성을 통칭하여 남녀를 모두 포괄	①남성형으로 여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형제애, 신사협정, 학부형
		②여성형으로 남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자매결연, 모국, 모교
	②호명순서의 불균형: 호명순서가 성차별적인 경우	①남성을 표준으로 여성에 앞서 호명되는 단어	남녀, 1남 2녀, 자녀, 신랑신부, 장인장모, 선남선녀
		②여성이 남성보다 앞서 호명되는 단어	처녀총각, 엄마아빠, 편모편부
나. 불필요한 성별 강조	①여성 혹은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대체적으로 직업을 지칭함)	①-1 여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	이00(여, 43세), 주부000, 여류000, 여직원, 여행원
		①-2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	남자 부하직원, 남자 전업주부, 남자 간호사, 남자 미용사
	②성역할이나 성별 속성을 고정관념화하거나 성별 이분법을 전제로 하여 여기에 맞지 않은 여성(남성) 인물의 예외성 강조	②-1 여자의 예외성	여자상사, 웅감한 여대생, 소녀장사, 기센 여주인
		②-2 남자의 예외성	새색시 같은 남자, 여인네처럼 청초한 그가, 소심한 남자
다.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①한 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①-1 여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옛되어 보이는, 꼬리친다, 양탈부린다, 양칼지다, 아들 아들, 여우, 여성미, 여성스러운, 질투, 가녀린, 청순
		①-2 남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과감한, 스케일이 큰, 능글능글, 씩씩한, 웅감한, 능름한, 슈퍼맨, 대장부, 졸렬한, 무뚝뚝
	②한 성과 관련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언어(아래 * 참조)	②-1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여성관련 언어	미망인, 출가외인, 집사람, 안사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
		②-2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남성관련 언어	기동서방, 왕자, 황제, 도련님, 가장, 집안의 대들보, 기동
라. 선정적 표현	①특정 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①-1 여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흑진주, 신데렐라, 레이싱걸, 엽기녀, 퀸카, 매력녀
		①-2 남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숫총각, 영계, 꽃미남, 완소남, 킹카
	②특정 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②-1 여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쭉쭉빵빵, 섹시 가슴, S라인, 환상의 바디라인
		②-2 남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울끈볼끈 가슴근육, 조각 같은, 탄탄한 근육
마. 특정성 비하	단어 선택 자체에서 비하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 반말이나 미성숙하고 유치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① 여성비하	여편네, 부엌데기, 솔뚜껑 운전수, 계집애, 암캐, 접대부
		② 남성비하	머슴, 기생오라비, 제비족, 수컷, 마마보이, 탕아

- *남성 능력 우위를 당연시하여 차별적 권력관계 조장
- *여성을 남성에 속한 것으로 표현
- *여성순결이데올로기, 현모양처 이데올로기, 신데렐라 콤플렉스, 남성 마초이데올로기
- *정상성에 벗어날 경우 한 성에게만 윤리 기준이 부과되는 별도의 호칭 적용 등

제5장_ 외국인과 이주민 인권

〈준칙〉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자격, 국적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다.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동화·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는 미담중심 보도를 자제한다.
 - 라. 이주민을 한국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평가하여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동정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실천매뉴얼〉

- 다음과 같은 보도 사례는 주의한다

구 분	사 례
인종차별적 언어 표현	“특히 오른쪽 어깨와 허리 부분을 살색으로 표현해...” 〈김연아, 지젤 의상 공개 ‘어깨 과감 노출’ 성숙미 강조〉(○○신문, 2011. 4. 29.)
	“사진의 푸른 피부는 원래 살색이며, 금발 머리는 원래 보라색이다” 〈몸에 그리고...찍고...한 장르는 너무 좋아〉(○○신문, 2011. 4. 19.)
	“짧은 치마에 살색스타킹, 저도 입고 싶지만...” 〈맨다리로 다니는 계절, 하지정맥류 보일라!〉(○○신문, 2011. 4. 18.)
	〈가려도 묘해...가희의 ‘살색’ 착시의상〉(○○신문, 2011. 1. 25.)
	〈레드카펫 선 흑진주 나옴이 캠벨〉(○○통신, 2011. 5. 3.)
〈‘흑진주’ 윌리엄스, 코트 복귀 준비〉(○○신문, 2011. 4. 13.)	
외국인 선수에 대한 잘못된 표현	〈‘부진한 용병투수들’ 양승호 감독. “교체해 말어”〉(○○신문, 2011. 5. 1.)
	〈두산, 새 용병 페르난도 영입〉(○○통신, 2011. 4. 27.)
외국인 노동자를 교도소 수감자와 비교하여 부정적으로 보도한 사례	“수감자들이 직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에는 중소기업체들의 결단도 한몫 했다. 안양에서 창고업을 운영하는 오모씨는 행사에 참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 오씨는 “출소자에게 물류창고 키를 통째로 맡겨야 하는 부담이 있다” 고 했다. 하지만 식자재 창고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어 구인난에 시달리던 오씨는 결국 수감자를 믿어보기로 했다. 오씨는 행사장에서 7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안양교도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신문, 2011. 5. 3.)

구 분	사 례
동화주의에 입각한 결혼이주여성 관련 보도 사례	〈칭찬받는 베트남 출신 ‘울산댁’〉(○○통신, 2010. 12. 4.)
	〈이주여성들 새해맞이…우리도 ‘한국 며느리’〉(○○방송, 2011. 1. 27.)
	〈한복입고 떡 썰고… “세시풍속 배워요”〉(○○방송, 2011. 2. 2.)
	〈“제 이름은 ‘박미진’ 입니다”〉(○○통신, 2011. 3. 8.)

〈준칙〉

2.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 가. 체류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 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는 용어.
- 나. 외국인노동자 등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전염병 원인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
- 다. 외국인 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어눌한 한국어 표현 등에 주목한 웃음거리 묘사.

〈실천매뉴얼〉

- 다음과 같은 보도 사례는 주의한다

구 분	사 례
성급하게 외국인 노동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보도	“특히, 안산시의 경우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도 학교에서 결핵이 대규모로 발생했기 때문에, 공장이 많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이 원인은 아닌지,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산에서 고교생 결핵 집단 발병〉(○○방송, 2011. 4. 15.)
	“방역 당국은 구제역 발생 농장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농장주들에 대한 출입국 사실을 파악해 감염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우에서도 구제역 발생 ‘비상’ ... 확산 방지 ‘총력’〉(○○방송, 2010. 11. 30.)
	“경북 군위의 농가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지난 3일 연천의 돼지농장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로선 가장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경북서 온 외국인 노동자 감염매개 의심 “이창범 축산정책관 일문일답”〉(○○신문, 2010. 12. 16.)
	〈법무부, 구제역 차단 위해 외국인노동자 이동 자제 당부〉(○○방송, 2011. 1. 28.)
중국동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도한 사례	〈보수단체 간부 모친 살해용의자 조선족인 듯〉(○○통신, 2011. 3. 22.)
	〈 ‘어버이연합’ 간부모친 피살용의자 조선족 가능성〉(○○통신, 2011. 3. 22.)
	〈보수단체 간부 어머니 피살사건...40대 조선족이 용의자〉(○○신문, 2011. 3. 23.)

구 분	사 례
외국인 범죄를 확대 해석한 보도사례	〈유학생 경쟁적 유치 외국인 범죄 양산〉(○○신문, 2010. 3. 24.)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체류자로 표현한 사례	〈불법체류자 많은 국가 송출 중단〉(○○신문, 2011. 5. 2.)
	〈비자만료 외국인 노동자 넷중 하나 불법체류〉(○○통신, 2011. 4. 29.)
	〈상의 안 입히고 수갑 채워서...인권없는 불법체류자 단속〉(○○신문, 2011. 4. 26.)

제6장_ 노인, 어린이, 청소년 인권

〈준칙〉

1. 언론은 노인을 사회적 부담이 아닌 독립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정책적·제도적 해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나. 노인을 지나치게 의존적 존재로 부각시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지 않는다.

다. 시설 생활 노인 등의 인권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인권침해를 감시한다.

〈실천 매뉴얼〉

- 다음과 같은 보도사례는 주의한다.

구 분	사 례
노인문제를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개인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접근한 보도 사례	“고령사회의 그들은 앞으로 올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질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다.” 〈데스크칼럼-늘어나는 노인 분노범죄〉(○○신문, 2011.5.17.)
	노인(범죄)들이 우리 사회의 부담이며 그늘이라는 문제점이 부각된 반면 제도적 대안 제시는 부족한 사례
	〈“병든 노인위해 써주오”〉(○○신문, 2007. 8.7.)
	무의탁 독거노인이 전 재산인 임차보증금 1천만원을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기사에서 제도적 접근없이 일회성 가십거리 기사로 다룬 사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노인은 판단력이나 셈이 약하고 속기 쉽다는 편견 등)를 조장한 사례	〈붕이 김선달도 놀란 땅사기〉(○○신문, 2011.5.11.)
	〈“1억 투자시 몇 배로” ...노인 올린 유전 사기〉(○○방송, 2011.5.12.)
	〈“자식 잘 된다” 노인 상대 뺏다방 사기〉(○○방송, 2011.5.6.)

〈참고〉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1991. 12.16. 유엔총회(결의 46/91)

● 독립(independence)의 원칙; 노인들은

-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참여(participation)의 원칙; 노인들은

-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 보호(care)의 원칙; 노인들은

-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아실현(self-fulfillment)의 원칙; 노인들은

-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존엄(dignity)의 원칙; 노인들은

-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준칙〉

2.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는다.

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해와 권리를 단지 그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지 않는다.

나. 어린이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지나친 선정적·폭력적 묘사를 자제한다.

다. 불우한 환경으로 주변의 도움이나 후원을 받는 경우 어린이나 청소년의 얼굴, 성명 등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실천 매뉴얼〉

- 다음과 같은 보도사례는 주의한다.

구 분	사 례
어린이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사례	각목 살인사건 보도(○○방송, 2011.5.15.)
	버스 정류장 교통사고 보도(○○방송, 2010.12.28)
어린이를 인터뷰하여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	〈초등학교 묻지마 폭력 성희롱 피해 '심각'〉(○○방송, 2011.5.20)
입양이나 시설아동 등에게 상처를 줄 우려가 있는 표현	“일간지 신춘문예 수필부분에 당선된 작가이기도 한 강씨는 성당에서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의 가슴 시린 아픔을 알게 됐다.” 〈입양아 8명 키우지만 불편함 없어요〉(○○신문, 2011.5.10.)
	“이곳에서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나 부모가 있어도 함께 지낼 수 없는 아이 39명이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폐쇄 앞둔 성남 '천사의 집' 아이들 “39명 생이별 막아주세요”〉(○○신문, 2010.2.20.)

- 어린이(청소년) 관련 보도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 **동의**
어린이와 인터뷰하기 전에 부모나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어린이는 어리면 어릴수록 자신의 의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어렵고 다루는 주제가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자신의 의사와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부모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일 어린이가 수업 중에 인터뷰를 해야 한다면 학교 측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익명**
청소년과 관련된 반사회적 이슈나 범죄행위를 보도할 때 청소년 개인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되도록 자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그것이 개인 자체보다는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신원을 밝히지 않아야 한다.

● 인터뷰 기술

어린이는 모르는 어른의 질문에 대해 자기 자신의 의견을 그대로 말하기 어렵고 질문자의 유도에 넘어가기 쉽다. 따라서 기자는 어린이와 인터뷰하는 경우, 기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필요한 말을 이끌어내는 것보다 그 어린이가 자신의 고유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 소년법

청소년들이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빈도가 증가하고, 이에 관한 사건 보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사회에 광범위하게 알려질 경우 성년기의 사회활동과 원만한 인격형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소년법의 경우 가해자, 피해자를 막론하고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해 본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영상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특히 청소년들에 의한 성범죄는 단순히 흥미유발을 위해 보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피해자의 관계가 밀접한 경우, 만일 피해자를 실명으로 보도하고 가해자의 익명 처리가 미흡했을 때에는, 피해자의 실명을 통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제7장_ 성적 소수자 인권

〈준칙〉

1. 언론은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은 표현.

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라.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표현.(=>1-라로 이동)

〈실천 매뉴얼〉

- 성소수자 관련 보도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한다.

구 분	사 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거나 잘못된 개념의 용어	- 동성연애, 동성연애자: 동성애가 바른 표현
	- 호모 : 호모섹슈얼의 비하 표현
	- 성적 취향, 성적 기호, 성적 선호 : 성적 지향이 바른 표현

구 분	사 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거나 잘못된 개념의 용어	한 개인이 참으면 해결되거나 남에게 방해를 주지 않고 혼자서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일로 오해 가능성
	커밍아웃: 현재 동성애자가 자신을 긍정하고 당당하게 정체성을 밝히는 의미로 사용. 범죄사실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동성애를 항문성교와 동의어로 사용하거나 동성 간 성행위를 막연히 동성애로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 혼동: 성 정체성과 성별 정체성을 구별 필요
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담아 은연중 편견을 강화시키는 표현	(동성애를) '조장' 또는 '만연', '유행'
	'은밀한', '파문', '논란'
	(동성애에) '빠져', (동성애를) '즐거'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충격', '경악'

- 다음과 같은 보도 사례는 주의한다.

구 분	사 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거나 잘못된 개념의 용어를 사용한 사례	〈안젤리나 졸리, 피트 다투고 동성연애 시작?〉(○○신문, 2011. 5.9.)
	〈中베이징시교위 “대학서 사랑학, 동성연애 등 강의하라”〉(○○신문, 2011.4.19.)
	〈13세 제자와 동성연애 나눈 교사에 징역 12년〉(○○신문, 2011.2.5.)
	〈동성연애자 헛소문낸 선배 살해하려다〉(○○신문, 2011.5.11.)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동성연애자 혐오에 맞서 키스하기, 차별에 항의하는 페루의 동성연애자 단체 시위입니다.” 〈이탈리아 총리 성매매 의혹 ‘루비’ TV 광고 등장 외〉(○○방송, 2011.2.15.)
	〈美연방법원, 軍 ‘성적취향 공개금지 규정 헌법위배 판결〉(○○통신, 2010.9.10.)
단어의 뜻을 왜곡하여 편견을 강화하는 표현	“그동안 대졸이라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아내도 제가 대학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커밍아웃’ 하고 절 퇴학시켰던 모교를 찾아갔습니다.” 〈실패도 젊음의 한부분입니다〉(○○통신, 2011.2.16.)
	“어쨌든 재미있는 것은 그가 이제는 ‘수석졸업’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공교롭게도 에드워드 권의 의혹 이후다. 자, 다음엔 누가 ‘커밍아웃’ 할 것인가 〈박찬일의 음식잡설①한국 스타 셰프의 허와 실〉(○○신문, 2011.3.38.)

〈준칙〉

2.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적 병리현상과 연결짓지 않는다.

- 가. 성적 소수자를 정신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
- 나. 에이즈 등 특정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현상과 연결짓는 표현.

〈실천 매뉴얼〉

- 성적 소수자 관련 보도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한다.

구 분	사 례
정신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	1973년 ‘정신질환에 대한 통계편람’ (DSM)에서 동성애는 삭제되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1993년 발간한 국제질병분류 ICD-10에서 “성적 지향은 정신적 장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기술
특정 질환과 막연히 연결시키는 표현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 간염, 성병 등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는 식의 표현은 편견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짓는 표현	동성애나 성전환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성매매나 마약중독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짓는 표현

- 다음과 같은 보도 사례는 주의한다.

구 분	사 례
근거 없이 특정 질환과 연결시킨 사례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동성애자, 마약중독자, 혈액투석 치료환자, 환자의 혈액을 취급하는 의료인도 감염될 위험이 높아” <전염성 강한 ‘간염’의 모든 것>(○○신문, 2007.6.28.)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표현이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한 사례	<사설- ‘인생은 아름다워’와 방송의 품위>(○○신문, 2010.10.25.)
	<긴급진단 ‘동성애’ “동성애 유혹을 구원으로 대체시키자”>(○○신문, 2010.11.30.)
	<신앙과 건강- ‘생육?번성’ 가로막는 동성애 창조 섭리 거스르는 사망의 길>(○○신문, 2011.3.27.)



인권보호준칙제정을 위한 세미나

언론시민단체 등 사전 검토 의견

- 언론인권센터
- 방송독립포럼(별쇄)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용인이주노동자센터
- 인권위 노인인권지킴이단 강사단
- 서울YMCA
- 한국성소수자문화인권센터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헌법 정신에 기초한 인권의식이 인격권의 기준이 돼야

윤여진(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미디어의 발달로 인격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미디어와 인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요구 받고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미디어 현상만큼 새로운 기준이 다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에 대한 재점검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인권보도준칙이 준비되는 과정을 통해 인권보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새로운 해석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느낀다. 인권보도준칙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이 준칙에 담긴 내용들이 언론보도의 가이드라인으로 충실히 기여하게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첨언한다.

인격권과 범죄보도

강호순 사건 이후 촉발된 흉악범의 얼굴 공개에 대한 논의도 이 준칙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다시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시 몇몇 언론사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며 범인의 초상을 공개했다. 사건을 통해 이미 공적인물이 되었으므로 초상권 등이 제한되거나 권리가 포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국민의 알권리가 범인의 인격권에 우선한다는 것이 당시 언론사들이 내세운 이유였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그 기본적 효력은 국가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거나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방어권적 성격의 권리로 국가를 권리행사의 상대방으로 하는 공권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것은 그 행사의 상대방이 국가 등 공권력의 행사주체인 것이다. 국민들이 알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는 사인(私人)인 한 범죄자가 될 수 없다. 얼굴이 궁금하다고 하여 그의 마스크를 벗길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언론사들도 국민들을 대신하여 그의 마스크를 벗기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거나 알고 싶다고 하여 보도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범인의 얼굴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분노와 단순한 호기심에 불과할 뿐인 것이고,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권침해가 정당화되지는 않는 것이다.

범죄를 통하여 공적 인물(public figure)이 되었으므로, 공인의 사생활 제한에 관한 이론인 '권리포기 이론'에 따라 초상권 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공인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공인은 다수가 관심을 가지는 사람(恭人)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 관계되는 사람(公人)이라고 할 때,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으로 범죄자가 공인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흉악범이 범죄를 통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킴으로서 공공의 영역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행위 자체로 인한 것이지 그 개인의 특정성까지 공공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이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 참조).

또한 하급심 판례이기도 하나, “공적 인물이 아닌 자의 범죄 혐의 신원확인 보도는 공적 인물의 경우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을 요하는바, 첫째로 그 범죄행위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사에 관한 포괄적 정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여론 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기사 작성상 불가피하거나 또는 범행이 직접적인 정치적 관련을 갖는 것이어서 그 중대성 때문에 포괄적인 해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든가, 둘째로 그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지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공적 생활이나 기타 사회의 상위 이익에 대하여 직접적 연관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원을 명시한 실명보도나 그 초상의 보도가 허용되나, 범행의 증거가 확정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그 혐의를 사전에 보도하여야 할 특별히 불가피한 이유가 있거나, 그의 범행이 자의로 진술된 신빙할 만한 자백에 의해 증명되었거나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하고 있다(서울고법 1996. 2. 27. 선고 95나24946 판결 참조).

얼굴공개가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범죄예방이라 하면, 범인이 향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는 것과, 일반인들이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범인이 이미 체포되어 극형이 예상되는 때는 더 이상 특별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흉악범의 초상을 공개한다고 하여 일반인들이 향후 초상이 공개될 것이 겁이나 흉악범죄를 저지

르지 않을 것이라 볼 근거도 희박하다. 사형이 형벌로 규정되어 있다가 폐지된 나라에서 그와 관련된 범죄가 특별히 증가하지 않는다는 연구를 살펴볼 때, 초상공개 정도가 그러한 흉악범죄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사건 당시 몇몇 언론사에서 사실을 통해 “○○○처럼 인간이기를 포기한 연쇄살인범에게까지 신원 보호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따져볼 때” 라거나, “국가가 존중하는 인권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역에 한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흉악범 초상공개의 근거에 흉악범죄자의 인권은 보호가치가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은 사형제 존폐에 대한 논의와도 맥이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죄 지은 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부인한다면 모르겠으되, 유죄판결로 가해질 처벌 이외의 사형(私刑)을 가하는 것을 허용할 근거는 없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기준이 그 사회의 인권지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범죄 행위로 인해 이미 기본적 권리를 모두 박탈당하고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가 있는 범죄자의 인권까지 보호된다면 그 사회 전반의 인권지수도 그만큼 올라갈 것이다.

인권보도준칙 실천 매뉴얼에 포함된 법원 관례 등 구체적인 보도사례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경우 인격권침해는 취재원에 대한 배려의 부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법규나 규정으로 강제하는 것만으로는 인권보호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자들 개개인에 대한 인권의식 제고를 교육 과정 마련과 그 운영을 통한 양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권보도준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가 자주 마련되기를 바란다. 이 준칙이 인격권에 대한 의미 분석이나 원칙 천명으로 끝나지 않도록 향후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와 교육 프로그램이 국가인권위원회나 기자협회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항목에 대한 지적은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범죄사건 보도에서 다.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신상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않는다. 를 다.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인권보도준칙안 의견서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장)

1. 장애인 인권 보도준칙 실천매뉴얼(비하용어 올바른 표현, 보도사례 주의 사항, 인권 실천을 위한 노력 등)이 적절하게 만들어 졌다고 봄.

2. 보도준칙 전문 :

「언론은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아울러 '다름' 과 '차이' 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아울러 다름이 차별의 이유가**('차이' 는 서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 를 삭제하는 것이 좋을 듯)

3. 몇 가지 사항 추가

- 기사 구성에 있어 장애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면, 장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을 듯 (예,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관에 임명되었는데, '인간승리' 등의 표현을 하면서 장애에 초점을 맞추면, 장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상징성이 퇴색될 수 있을 것임)
- 기사(특히 미담기사)에 있어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이나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피할 것
- 장애로 사지불구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신만은 멀쩡하다는 식의 상투적 문구는 피하는 것이 좋을 듯
- 성공한 장애인을 다루는데 있어 마치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4. 오자 교정

- “**장애를 극복하고 불굴의 의지로**” : ‘어떤 특정한 기능의 결여로 인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라는 부정적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어떤 특정한 기능을 제외하곤 가능한 일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 이란 인식 중요

- **장애인의 행복추구권 보장하기:** 장애인을 신체적 결함이나 사회활동의 제한 등을 부각하여 장애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는 존재로 묘사하거나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는 초인적 존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과 **꿈**을 갖고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그자체로 인식할 필요
- **특정한 날에만 장애인 이슈를 다루지 않기:** ‘장애인의 날’ 등 특정한 날짜만 장애인 이슈를 다루지 않고 늘 장애차별을 위한 발골도보를 찾고 장기적인 기획도보를 고민할 **필요**

〈인권보도준칙(안)〉 관련 의견서

윤정주(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1. 〈전문〉 관련

전문에 전반적으로 〈인권보도준칙〉에 대한 내용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됨. 그러나 가장 핵심이 되는 다음 문장의 '주의를 기울인다'와 '노력한다'는 맞지 않는다고 봄. 이는 실천지침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인데 단지 '주의를 기울인다'와 '노력한다'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임.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했으면 함.

언론은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아울러 '다름'과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언론은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다름'과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총강〉 관련

3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인권 실현을 위해 언론이 해야 할 일을 적시하고 있으나 3.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신장은 다른 언론의 인권 보호와 실현의 내용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됨. 따라서 3번은 총강에서 제외시켰으면 함.

또한 6번의 경우 자살과 관련한 생명존중이 왜 인권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기자들이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음. 이들이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쉽게 풀어써 줄 필요가 있음.

3. 주요 분야별 요강

① 〈제1장 민주주의와 인권〉 관련

- 제1장의 경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표현과 인권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가 잘 와닿지 않음. 특히 각각의 항목을 보더라도 1항의 경우는 국민의 인격을, 그리고 2항의 경우에는 특정 집단이나 계층

의 인권에 대한 설명임. 따라서 제1장의 경우 <민주주의와 인권>이 아니라 <국민 또는 특정 집단과 인권>이라고 해야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음.

- 1항의 '나'의 경우에도 사회 각계 권력층을 특정집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2항으로 옮기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함.
- 만약 <민주주의와 인권>을 계속 쓰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더욱 필요할 듯함.

② <제2장 인격권> 관련

- 제2장의 경우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인격권만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 못지 않게 죽은 사람의 인권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함. 따라서 이번 장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인권 보호 또한 반드시 다루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요즘 방송보도에서 CCTV 화면이 부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사람이 죽는 장면을 포함해 죽은 사람의 사체 등이 여과없이 보여지고 있음. 이는 희생자 본인을 포함해 희생자의 가족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③ <제4장 성평등> 관련

- 1항의 '나'의 경우 '미망인'은 남편이 죽었을 때 아직 따라죽지 못한 아내를 지칭하는 것으로 가부장적 표현임. 따라서 '미망인'이라는 용어를 '여성만을 지칭하거나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여성 또는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에 넣는 것은 적절한 사례가 아님. 그러므로 '미망인'은 성차별적인 용어 또는 가부장적인 용어로 분류해야 맞음.
- '마'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직업을 하나의 성으로 지칭하는 용어'의 경우 우리나라 언어는 fireman, policeman 같이 직업에 하나의 성만을 쓰는 영어와는 달리 앞에 '여' 또는 '남'을 붙여 직업의 성별을 구분함(예. 여자 소방관, 여자 경찰관, 여의사, 여사장, 남자 승무원, 남자 간호사 등). 그러므로 이 항목은 '가' 항목에 포함시켜도 무방할 것 같음.
- 더 포함시켜야 할 것은 특정성이 아닌 여성과 남성 모두 해당하는 통계나 그래프 등을 활용할 때 반드시 아이콘이나 이미지 등을 여성과 남성 모두 넣어 특정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아야 함.
- 또한 스포츠 선수, 정치인 등 여성 전문인에게 '미녀새', '요정', '태극 남자' 등 여성성을 부각시키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 포함되어야 함. 전문가에게 이러한 별칭이 사용될 경우 그들의 업적 보다는 외모와 여성성이 부각되어 나타나 보이기 때문임.
- '성평등한 기사 또는 여성 관련 기사 발굴에 노력한다.'라는 항목이 더 필요함. 여성과 관련한 기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관련 기사나 성평등한 기사를 발굴해 보도함으로써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성평등한 시각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임.

-실천 매뉴얼의 경우 준칙의 각 항목에 따라 사례를 배치하는 것이 기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함.

예)

구 분	사 례
<p>가. 전문직 여성들의 경우 '여류작가' 처럼 여성을 예외인 것처럼 만드는 표현</p>	<p>〈고교생이 여학생·여교사 폭행하고… 흡연학생 체벌한 교사 중징계받고〉(○○신문 2011.4.21.)</p>
	<p>〈“술집서 알바 사실 왜 알렸나” 술 먹고 여교사·학생에 폭력〉(○○신문 2011.4.20.)</p>
	<p>〈술 취한 여고생, 학교에서 여학생·여교사 폭행〉(○○신문 2011.4.20.)</p>
	<p>〈검찰 첫 전문 여검사 3층사 탄생〉(○○신문 2011.2.20.)</p>
	<p>〈첫 전문검사에 '여검사 삼총사'〉(○○신문 2011.2.8.)</p>
<p>나. '미망인' 등 여성만을 지칭하거나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여성 또는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p>	<p>“미망인인 고일신 여사가 비에 현화하고 있다.” 〈농민문학가 이무영 기리는 무영제 열려〉 (○○통신 2011.4.20.)</p>
	<p>“출근했다가 집에 못 돌아왔으니 꼭 집에 들렀다 가야한다는 미망인의 뜻에 따라…” 〈운구가 떠난지 3시간 후에 도착한 편지에 두 번 운 경찰관들〉(○○신문 2011.4.7.)</p>
	<p>“부익재 광복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사진)은 22일 고(故) 이운강 애국지사의 미망인인 김춘색 회원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 〈애국지사 미망인 방문〉(○○신문 2010.12.23.)</p>

④ 기타

- 어린이 인권에서 더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방송 보도에서 재연장면에 ‘어린이를 출연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임. 이는 방송심의규정 제39조 ①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특히 어린이 성폭행, 납치 등 어린이 관련 사건의 경우 더욱더 어린이가 재연하는 것은 안됨. 만약 꼭 설명이 필요하다면 이를 애니메이션이나 그래픽 등으로 구성하여 보여주어야 함.
- 각 항목마다 주요 분야별 실천 매뉴얼이 있는데 금지 용어 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표현들이 예시로 보여주는 것은 아주 좋음.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면 좋을 것 같음.

인권보도준칙(안)에 대한 의견

고기복(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용인이주노동자쉼터 대표)

인권보도준칙(안)은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준거를 마련하고, 언론의 인권증진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인권보도준칙(안)이 전문에서 밝히듯 권고 형식의 문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필수덕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 인권보도준칙(안)을 토대로 좀 더 적극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1. 전문과 총강 관련

전문과 총강은 선언적 의미에서 무난하다고 보며, 주요 분야별 요강에서는 제1장 민주주의와 인권에서 항목 하나를 추가하였으면 한다.

추가 의견-) 마. 특정 국가를 비하하거나 특정 인종 차별을 조장하는 용어

2. 제5장 이주자와 외국인 인권 관련

요강 전체적으로 보면 제목과 각 항목에서 용어에 대한 혼선이 있다. 제목의 경우 '이주자와 외국인 인권'은 영주권자 혹은 국적 취득을 한 '이주자'와 그렇지 못한 '외국인'을 체류자격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이주민'으로 통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러한 용어가 혼선되기 시작하면,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마저, 우리사회 시선은 그들을 '영원히' '외국인'으로 남게 할 것이다. 흔히 말하듯, '한국사람 다 됐어! 라고 할 정도로 유창한 한국어를 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하며 아무리 오래 한국에 거주했다 해도, 상대방은 여전히 아직은 못 미더운 '외국인'이지, '한국사람'이 아닌 셈이다. 국적을 취득한 사람마저 영원히 외국인으로 머무르게 하는 사회에서, 하물며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시선이야 오죽하겠는가?)

현재 이주인권 관련 용어 사용에 있어서 외국인,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자녀, 아동), 이주아동 등등에서 그 범위와 용례가 두루뭉술하게 뒤섞여서 혼선을 빚고 있고, 그러한 용어들이 사회적 낙인과 배제를 낳는 경우가 있어서 용어에 대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문화이동이라 하면, ‘방과 후 학습’에서 예외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활동’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구분시키는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경향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대부분인) 이주아동들 또한 다문화아동인 것처럼 보도하여, 제도적으로 아무런 혜택도 못 받는 이주아동들을 배제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는 점에서 관련 용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자격, 국적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 ‘모든 외국인’: 위 제목에 비추어 보면,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인권보도준칙(안)에서 뜻한 바는 국적 취득자를 배제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모든 이주민’이 타당할 것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동화·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는 미담중심 보도를 자제한다.

→ ‘외국인들’: 한국문화에 동화, 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미담중심 보도는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도에서 자주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대상을 명확히 해 주는 것은 어떨까?

라. 이주민을 한국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평가하여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동정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2.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가. 체류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는 용어.

→ 관련 용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 생소한 분야를 처음 접하는 기자들의 경우 실수할 수 있는 만큼, ‘불법체류자’ ≒ ‘미등록 체류자’라는 용어를 명시해 주는 것이 좋을 듯.

나. 외국인노동자 등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전염병 원인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

→ 외국인노동자: ‘외국인’이라는 단어에서 내외국인을 구분하고 차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ILO나 UN이주노동자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인 Migrant workers, ‘이주노동자’라고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외국인 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어눌한 한국어 표현 등에 주목한 웃음거리 묘사.

→ 나.와 동일

3. 아래 내용은 보충했으면 좋겠다.

라. 이주노동자들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과 다를 바 없는 고임금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보도를 지양한다.

→ 최근 중소기업의 인력난 보도에서 보이는 문제는 이주노동자를 단순히 일하는 기계로만 각인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서의 유일한 대안으로 이주노동자를 언급하고,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의 임금이 높다는 식의 보도는 장시간, 고강도의 이주노동자 노동현실을 외면한 채, 이주노동자들이 고임금을 요구하여 영세중소기업체의 경영난을 부추긴다는 식으로 그려지고 있는 점은 고용주 일반의 시각만 반영한 보도 행태다.

→ 예) 외국인 노동자 '귀한 몸' ...구인경쟁 치열하다(sbs,6월25일)

마.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어려운 인터뷰이와 인터뷰를 할 때는 반드시 통,번역을 통해 정확한 의사 전달이 가능토록 한다.

→ 어눌한 한국어로 의사표시를 하게 하기보다는 자국어로 의사 표시하는 것을 통역을 통해 전달하거나, 자막(번역) 처리를 하는 것이 <이주민=어눌한 한국어>라는 등식을 깨는 길일 것이다.

3. 실천 매뉴얼(안) 관련

가.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전염병 원인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

- 예) 도망: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업체를 이탈할 경우, 이를 두고 '도망갔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반하는 표현이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이직을 하는 행위마저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것인 만큼, '도망'이라는 표현을 지양하는 것이 맞다.

나. 용어 오류

- 중국동포 ⇄ 재중동포

'동포'와 '교포'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포는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을 뜻하는 반면, 동포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을 뜻한다는 점에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동포'라고 하면, 중국이라는 주권 국가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재미교포/동포', '재일교포/동포'라고 하듯이, 중국 국적의 동포들은 '재중동포'라 칭하는 것이 어법상 맞다.

인권보도 준칙(안)에 대한 노인인권분야 의견(안)

박용기(인권위 노인인권지킴이단 강사단 대표)

제 목	초 안	의 견
전문	언론은 모든 사람이~~~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는다	언론은 모든 국민이~~~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언론 보도의 목표로 삼는다.
총강 1.	언론은 인권의 증진이 기본적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언론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기본적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8.	언론은~~~비롯한 국제 규범과~~~	언론은~~~비롯한 각종 국제 규범과~~~
제1장 1.	~~침해한 경우 솔직하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침해한 경우 피해자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이를 바로 잡는다
	가.~~~국민을 하시는 용어	~~~국민을 무시하는 용어
2.	다. ~~정당화하고, 기업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특정 기업의 입장을~
제3장 1.	언론은 장애인들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나. ~~담고 있는 속담구	언론은 장애인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존감, 인격권을~~ ~~담고 있는 관용구
제6장	노인, 어린이, 청소년 인권	노인 인권 (어린이, 청소년 인권과 분리)
1.	언론은 노인을 사회적 부담이~~	좌 동
2(신)		<p>언론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노인에 대한 기존의 고정 관념이나 편견으로 인해 노인 인권이 쉽게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p> <p>가. 단지 연령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시장 등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일조한다</p> <p>나. 노동인구의 감소와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로 차후 발생될 세대간 갈등에 대한 해법에 관심을 갖는다</p> <p>다. 노인 스스로 자립하므로서 사회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지속적 개발에도 관심을 갖는다</p> <p>라. 노인 학대, 우울증,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이슈화하여, 사회가 이에 대한 관심과 해법을 모색토록 한다</p>

제 목	초 안	의 건
2(신)		마. 노인 관련 반인륜적 범죄의 보도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인권의식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7장(신)		어린이, 청소년 인권
1		좌 등
2(신)		따돌림, 학교폭력, 차별, 인터넷 중독, 유해사이트 접속 문제 등을 보도함에 있어 문제점 중심보다는 대안을 제시토록 하고, 특히 상처받기 쉬운 어린이, 청소년의 인격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인권보도준칙 실천 매뉴얼(안)에 대한 의견(안)

제1장 1	권위적 용어:~~~	~~~(추가) 각하, 영부인, 어록, 순시
	국민 하시 용어:~~~	~~~(추가) 하층민
2	특정집단 비하:~~~	~~~(추가) 꼴통보수, 좌빨
	계층간 갈등:~~~	~~~(추가) 산동네, 로알층
제6장 노인~ <실천 매뉴얼> 보도사례	노인 문제를 ~~~ “고령사회의 그들은 ~~~”	<p>(추가) 반인륜 범죄를 사회적 파장(특히 청소년 영향)을 고려치 않고 가십성 보도한 사례</p> <p>“부모 살해한 뒤 파티 연 '막장 고교생' 충격”(oo신문, 2011. 7.20)</p> <p>“미국 플로리다 주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17세 타일러 하들리가 지난 16일 부모를 흉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p> <p>소년은 부모의 사체를 침실에 숨긴 뒤 친구 60여명을 집으로 불러 광란의 파티를 열었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줬다”는 식으로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들에게 도덕적 불감증을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치 않고 선정적으로 보도한 사례</p> <p>“종암서, 방화로 부모 살해한 20대 패륜아”(oo일보, 2009. 10. 12)</p> <p>“서울 종암경찰서는~~강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강씨는 지난 7일 오후11시 10분쯤 성북구 월곡동 다세대주택 3층 거실에 불을 질러 잠자고 있던 아버지 강모(58)씨와 어머니 이모(52)씨를 살해하고 동생 강모(13)군을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교 졸업 후 무직으로 살아오던 강씨는 몇 년 전부터 강남에서 식당을 위탁 경영오다 지난 1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부모에게 식당을 차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부모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경찰에서 “부모가 자신에게는 무관심하고 동생만 편애하는데다~~~” 식으로 선정적으로 보도한 사례</p>

‘어린이 청소년 관련 준칙’에 대한 의견

안수경(서울YMCA 어린이영상문화연구회 간사)

앞부분의 여성, 장애인 관련 준칙과 비교해서 노인, 어린이 관련 준칙은 내용이 적고 사례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더 모아서 기술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보접근권

1. 어린이 청소년이 사회적 약자의 입장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주요 언론의 정보 제공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뉴스 보도의 대상으로만 취하지 않으며 뉴스, 보도의 시청자 독자의 입장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 준칙이므로, 어린이 프로그램과 관련한 어린이 권리영역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어린이에게도 해당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도 보도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명시했으면 합니다. 이런 기반이 있어야 어린이 뉴스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린이, 청소년에게도 그들을 위한 뉴스(보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YMCA 입장입니다.)

2. 어린이 및 청소년 연령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볼 권리가 있습니다. 성인물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이기도 하고요. 언론보도는 모든 연령층이 접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보도사진 및 세부 기사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안전

3. 참사 혹은 어려운 일을 당한 어린이에게 보도를 위해서 다시 상기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하기 끔찍한 사고를 당한 어린이에게 취재를 목적으로 다시 상기시키지 말아야 할 것을 적시했으면 합니다.

- “성폭행 당했지만 해맑던 아이, 난 취재할 수 없었다”(한겨레, 10, 7.5)

4. 위기 상황에서 보도를 위해 어린이, 유아를 위험한 상황에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준칙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독수리 옆의 갓난아기 사진처럼 위험한 상황을 방치하고 보도에 치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기가 오래 울도록 방치하는 것까지도 포함입니다.)

인격 존중

5. 앞서의 조항에도 있지만, 장애인, 다문화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권리도 다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특별히 부각시키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할 것 같습니다.

6. 유아, 청소년들의 벗은 모습을 직접 신지 않아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시기의 보도나 사진 등으로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수 있을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 초딩, 중딩, 고딩 등 연령을 통해 대상을 무시하는 용어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여름방학과 ‘초딩 파워’에 힘입어 넥슨이 자사 포털로 서비스중인 게임으로만 동시 접속자수 100만명 시대를 열었다.”

“ ‘무한도전’ 노홍철, 초딩들에게도 사기 본능 “나 찍으면 공부 잘한다” ”

※ 특히 초등학교생들의 능력을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어린이를 조롱하는 방식의 기사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어린이 청소년 관련 기사를 다룰 때에는 사건의 보편성과 특이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어린이 청소년 관련 기사를 사건 보도와 문화현상에 대한 해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대부분 청소년들의 범죄행동을 ‘요즈음’ 청소년들의 문화 형태로 규정하는 보도 관행이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문화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데, 그 오해가 부정적일 가능성이 매우 커서 문제입니다.

- 졸업빵 나체 청소년 기사의 경우 사건 중심으로 다루지 않고 청소년 문화를 대변하는 것처럼 규정 짓는 사례(그 결과 졸업식의 경찰단속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 청소년들의 폭력 행동에 대한 보도 역시 기자의 근거없는 추측과 해석을 자제해야 한다.

초상권

9. 어린이와 관련한 보도시 게재 되는 사진이나 영상 중 어린이의 초상권보호나 자기결정권은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 '아동복지법' 이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내법과 국제 인권법은 '아동 이익의 최우선 고려 원칙' 을 천명하면서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명예 등 인격권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언론이나 방송도 예외는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대중매체에서 어린이의 초상권 보호나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의미로써 자기결정권을 존중 하는 정서를 만드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사례) 2010. 12. 21.과 22. 23 주요일간23개지에 게재된 서울시 무상급식반대광고에 대해 2010. 12. 23. MBC 뉴스데스크 등 언론이나 주요방송사는 이 광고 포스터에서 아동의 초상권 침해 논란을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나 그 보도의 영상이나 사진 속 역시 이 광고 포스터를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그대로 사용. 보도내용은 어린이의 초상권 침해를 문제 삼지만 정작 어린이의 초상권이나 인격권은 보호받지 못했다.(이중적 인권 침해 사례)

10. 전쟁,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의 실명을 다루지 않는 것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 취재 당하는 어린이들의 권리가 있을 것 같은데 적절한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 출연 아동에 대한 규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서도 인터뷰 할 당시 어린이 청소년들의 다른 활동에 방해되지 않아야 하거나 다른 친구들의 놀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사항들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보도준칙(안)에 대한 의견서

한채윤(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

1. 전체적인 구성에 관한 의견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인권보도준칙으로서 크게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AIDS나 간염 등의 전염성 질병과 관련한 보도에서 드러나는 인권 침해도 다룬다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에이즈의 경우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편견과 선입견이 많아 보도준칙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장애’ 나 ‘성적소수자’ 항목에서 다룬다면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어 포함시킨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 에이즈 관련 보도중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 이미 구성된 다른 영역에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 몇 가지 예시를 전합니다.

1) 최근 기사입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했고 그 소송에서 남편이 언제 부인에게 HIV 감염 사실을 알렸느냐는 시기가 상반되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기사들은 첫날 밤을 가진 후에 말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흥미를 끌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히 밝혀진 사실이 아니므로 인권보도준칙의 ‘인격권’ 항에서 지적한 대로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은 보도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첫날 밤후 “사실 나 에이즈야” 고백... 40대 부부 법정공방 쿠키뉴스 사회 2011.07.20

- 첫날 밤 치르고 에이즈 고백... 남편-아내 법정 공방 동아일보 사회 2011.07.20 (수)

2) 두 번째는 오랫동안 지적되어왔지만 여전히 기자들이 눈길을 끌기 위해 ‘소나무 에이즈’란 표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이라고 정확한 말을 두고 ‘소나무 에이즈 확산’ 과 같은 표현으로 에이즈

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킵니다.

- 전남 동부권 '소나무 에이즈' 확산뉴스시스 사회 2011.07.06 (수) 오전 11:48

'소나무 에이즈' 로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전남 동부권에 급속히 확산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여수 침산(국가산단 뒷산)에서 소나무 재선충이 첫 발생한 이후...

- '소나무에이즈' 비상.. 전남 동부권 확산연합뉴스 사회 2011.07.06 (수) 오전 11:09

여수,순천,광양지역 114ha 감염..작년 10월 첫 발생이후 방제 실패 '소나무 에이즈' 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전남 여수,순천,광양시지역에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첫 발생 이후 추가감염을 막지...

2. 성적소수자 항목에 관한 의견

2-1. 트랜스젠더 부분 강화

전체적으로 사례에 트랜스젠더 부분이 적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몇 가지 사례를 더 드립니다.

1) 트랜스젠더는 사람들에게 신기한 존재라는 전제하에서 기자가 살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눈길을 끌고자 오히려 가해자의 심리에 동조하여 기사를 쓴 경우입니다.

- "여친이 트랜스젠더!" 황당 20대男, 핫김에 살해 문화일보 2010-05-28 11:28

- "트랜스젠더였어?" 20대男 연인 핫김에 살해 뉴테일리 사회 2010.05.28

위의 문화일보 기사는 황당해서 핫김해 살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황당해했다는 것은 가해자에 기자가 오히려 감정이입을 하고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라는 사실 자체가 화를 낼 만한 사항인지에 대한 것도 없습니다. 이 기사에 실린 내용은 나중에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기도 했지만 당시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애인이 트랜스젠더여서 화난 것이 아니라 트랜스젠더임을 밝히지 않아서 그동안 속인 것에 화가 나아하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기사는 트랜스젠더여서 놀랐다는 식입니다.

아래의 기사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 기사는 트랜스젠더였다고 격분했다고 보도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유방확대수술을 했다는니 뛰어난 미모, 유사성행위 등의 이야기까지 피해자를 대상화하는 묘

사를 기사화했을 뿐 아니라 가해자의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4년동안 애인이 트랜스젠더인 것을 모르고 사귀었을까만 궁금했으니까요. (뒤에 밝혀진 바로는 가해자는 피해자가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 “애인이 트랜스젠더라니...” 격분 살해

이현주기자 msyu@hk.co.kr 관련기사 경북 경산경찰서는 28일 4년간 사귀 애인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24· 경북 경산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3일 오후6시30분께 대구 남구 봉덕동 한 여관에 투숙, 김모(24)씨와 성관계를 하려다 김씨가 남자라는 사실을 알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경북 경산시 압량면 하천 제방 아래 던졌다. 숨진 김씨는 유방확대수술과 호르몬제 복용 등으로 뛰어난 미모를 가졌으며 조만간 성전환수술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4년 전 PC방 아르바이트 생과 손님으로 처음 만난 이들은 그동안 수시로 만나며 유사성행위는 했으나 직접적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2) 위의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트랜스젠더를 성폭행한 것이 더 신기한 것처럼 다룹니다.

기사의 타이틀은 “20대 강도, 성전환 50대 성폭행 하려다 잡혀”(계재 일자 : 2008-09-19) 라고 달렸고 그 아래 내용의 첫 줄은 “가정집에 침입한 20대 강도가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50대 트랜스젠더에 대해 트랜스젠더인 줄 모르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인 줄 알거나 모르거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성폭행을 시도하다 잡힌 것이 웃긴다는 식으로 기사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2-2. 동성애자 관련 부분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동성애자를 강조하는 기사 역시 편견의 발로입니다.

아래 밑줄을 그은 부분들은 굳이 동성애라는 단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동성애자인지 아닌지를 기자가 직접 본인에게 듣거나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수식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성간의 비슷한 사건이 생겨도 이성애자가 김 모씨가 이성애자 이 모씨와 사귀다 이성애자 박모씨를 질투심에 살해.. 라는 기사는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7장 성적소수자, 준칙 1의 다 항의 구체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인천서 동성애자간 살인 피의자 경찰에 자수 | 입력시간: 2011-05-25 [17:11:00]

동성애 여성들끼리 삼각관계를 이어오다 질투 끝에 상대방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A(24) 씨가 22일 오전 3시 10분쯤 부모와 함께 경찰에 찾아와 자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밤 10시쯤 인천시 가정동의 한 도로가에서 **자신과 사귀던 동성애자인 B(30)씨**를 차 안에서 기다리던 중 **B씨의 전 동성애자인 C(34)씨**를 만나 시비를 벌이다 모욕감을 느껴 흉기로 C씨의 목과 가슴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경향신문 2011-04-24

삼각관계에 있는 **여성 동성애자가 질투심을 참다 못해 살인까지 저질렀다.** 지난해 말부터 ㄱ씨(30·회사원)는 ㄴ씨(34·회사원)와 **동성애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에 카페를 운영하는 ㄴ씨(24)가 ㄱ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이후 ㄴ씨와 ㄴ씨는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도 했고 ㄴ씨가 ㄴ씨에게 심하게 맞았다. 질투심과 모멸감을 참지 못한 ㄴ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50분쯤 ㄱ씨가 살고 있는 서구 가정동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차 안에서 기다렸다. 김씨가 일주일째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ㄱ씨 집 앞에 헤어진 줄 알았던 ㄴ씨가 나타나면서 시비가 붙었다. 이에 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가져가기 위해 구입해 놓은 흉기로 ㄴ씨의 가슴을 3차례 찔러 살해했다. ㄴ씨는 살해 이후 5시간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2-3. 준칙안에서 조금 더 자세히 수정할 부분

1) 25페이지 표 첫 번째 칸에서

→ 동성연애, 동성연애자 : 동성애가 바른 표현

→ 동성연애, 동성연애자 : 동성애, 동성애자가 바른 표현

으로 수정하면 더 좋겠습니다.

2) 역시 같은 도표의 3번째 칸의 내용인

→ 성적 취향, 성적 기호, 성적 선호 : 성적 지향이 바른 표현

*한 개인이 참으면 해결되거나 남에게 방해를 주지 않고 혼자서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일로 오해 가능성

→ 성적 취향, 성적 기호, 성적 선호 :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 바른 표현.

* 이는 동성애가 마치 개인적이고 임의적인 선택에 불과하며 때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표현임.

으로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3) 같은 도표 네 번째 칸: 정세성→정체성으로 오다 수정 필요

인권보도준칙(안) 의견서

- 누가 : 대구 언론&인권 공부모임 '이름하나 안정하고'
- 일자 : 2011. 7. 20.
- 정리 : 허미옥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 글 문맥상 보완할 항목

총강

1. 언론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 언론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실현한다.**
(총강 2~8조는 모두 '~한다' 라고 문장을 마치고 있지만, 1조만 '~노력한다')
7. 언론은 인권교육매체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한다.
→ 언론은 **저널리즘 원칙을 준수하는 미디어**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및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한다.

제1장 민주주의와 인권

2. 언론은 특정집단이나 계층에게 편향적이거나 차별적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언론은 특정집단이나 계층에게 편향적이거나 차별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가. 특정 정치인(집단)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용어.
나. 노사관계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나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는 표현.
→ **노사관계에 편파적이거나**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는 표현.
다.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빈부격차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용어.
→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빈부격차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용어.

제3장 장애인 인권

1. 언론은 장애인들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속담구.

→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느낌(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구.

다. 장애 부위와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표현.

→ **장애 유형과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표현.

라. 장애인을 보장기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한 표현.

→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한 표현.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장애에 대한 **편견과 왜곡**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4장 성평등

2. 언론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언론은 **인간**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나.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키는 사진이나 영상.

→ **인간**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키는 사진이나 영상.

제5장 이주자와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간다**

다.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동화·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는 미담중심 보도를 자제한다.

→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동화·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는 **보도를** 자제한다.

라. 이주민을 한국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평가하여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동정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 이주민을 한국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평가하여 **무시, 비웃기, 동정** 등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2.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가. 체류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 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는 용어.

→ 체류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 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

나. 외국인노동자 등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전염병 원인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

→ 나.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민** 등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전염병 원인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

다. 외국인 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어눌한 한국어 표현 등에 주목한 웃음거리 묘사.

→ 다.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민** 등을 동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어눌한 한국어 표현 등에 주목한 웃음거리 묘사.

제6장 노인, 어린이, 청소년 인권

2.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는다.

나. 어린이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지나친 선정적·폭력적 묘사를 자제한다.

→ 어린이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선정적·폭력적** 묘사를 자제한다.

제7장 성적 소수자(or 성소수자) 인권

1. 언론은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은 표현.

→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느낌(의미)**를 담은 표현.

■ 신문윤리강령과 충돌하는 부분

제2장 인격권

1.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가. '공인' 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공인' 의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내용과 관련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 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보도기사는 취재원을 원칙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이를 보도해서는 안된다.

①(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한 밝혀야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배경설명과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이 심층배경설명을 할 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의 익명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되, 취재원의 소속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혀야 한다.

⑤(취재원 보호)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 맥락상 항목 이동이 필요한 경우

- 5장 2조 라 항목은 1조 다항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조항을 따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항목을 묶을 필요 있음

제5장 이주자와 외국인 인권

(5장 1조 다) 다.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동화·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는 미담중심 보도를 자제한다.

(5장 2조 다) 다. 외국인 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어눌한 한국어 표현 등에 주목한 웃음거리 묘사.

■ 법률적 용어 사용의 문제

제6장 노인, 어린이, 청소년 인권

2.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는다.

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해와 권리를 단지 그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지 않는다.

나. **어린이**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지나친 선정적·폭력적 묘사를 자제한다.

다. 불우한 환경으로 주변의 도움이나 후원을 받는 경우 어린이나 청소년의 얼굴, 성명 등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어린이, 청소년의 구분 기준은?

- 아동권리협약, 청소년 기본법, 선거법 등에서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구분 기준을 참고해서, 정확한 용어 사용이 중요할 터.

- 아동권리협약: '아동' 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 신문윤리실천요강에는 <제13조 어린이 보호>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어린이 청소년' 에게만 제한한 보도 방향→전체 대상으로 확대 필요

제6장 노인, 어린이, 청소년 인권

2.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는다.

나. 어린이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지나친 선정적·폭력적 묘사를 자제한다.

- '선정적, 폭력적' 묘사를 자제하는 보도유형, 즉 저널리즘 원칙은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공히 적용되어야 할 규정이지, '어린이' 영역에만 제한할 항목이 아니라고 봅니다.
- '선정적, 폭력적' 묘사를 자제는 '어린이' 영역으로만 축소할 것이 아니라, 언론으로써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항목으로 이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 신문윤리실천요강에는 <제13조 어린이 보호>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에는 <제13조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

①(어린이 취재 보도)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의 승인없이 어린이(13세미만)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기자는 학교장이나 유치원장 등 보호책임자 동의없이 어린이를 접촉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

②(성범죄와 어린이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③(유괴보도제한 협조)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제한요청에 응해야 한다.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인권보도준칙제정을 위한 세미나

부록

기자협회보 연재기사

한국기자협회 · 국가인권위원회 공동기획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권보도가 만든다!

주의해야 할 장애인 보도 사례	
구분	사 례
잘못된 장애인 반대말 표현	"듣지 못하는 성심야구부 선수들의 집중력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정상인들에 비해..." <성 각장애 충주성심야구부 '꿈의 1승' 도전> (뉴스 2011.3.24) "장애인 가구의 주거 환경이 정상인 가구보다..." <장애인 주거비 부담 정상인보다 커> (한국경제 2010.7.21)
부정적 편견을 강화하는 속담 인용	"휴대전화 업체·이통사, 출고가 '꿀먹은 병어리'" (한겨레 2011.3.30) "보령지의 축산농가, 번머리 냇가술, 한우가격 하락으로 근심" (뉴스 2011.2.22) "수쿠크밥 논란은 장님 꼬끼리 만지는 꼴" (연합뉴스 2011.4.6)
장애를 비정상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	"독해는 되는데 작문을 못해요-질문말이 영어는 이제 그만" (내일신문 2011.3.28) "저자는 중국이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 절름발이 국가라는 관점을 버리고 권한다." <중의 성장... 훗는 막지 말고 즐겨라> (한국일보 2011.1.21) "장애를 알고 있는 관씨는 경찰조사에서..." <장애인이라고 무시해...> 30대 여성 연쇄범죄 (MBC TV 뉴스데스크 2011.4.10)
장애와 질병을 혼동한 표현	"경찰은 박씨가 지적장애를 알고 있으면서..." <지적장애여성 폭행 파렴치한 2명 구속> (충청일보 2011.4.4) "발달장애를 알고 있는 이근도 군과 아버지 이진성 씨가..." <장애인이 행복하게...>父子간 부산-서울 '희망 전기' > (매일신문 2011.3.28)
장애 보조 도구 이용에 대한 잘못된 표현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 어머니(85)와 피난중인 우부(61)는..." <조용히 참던 일본인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겨레 2011.3.29) "자신도 세 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난 뒤 휠체어에 의존하는..." <기자의 본체사 없는 몸짓 연기 2시간 30분...장애인 극단의 감동> (동아일보 2011.3.23) "하루 10시간 이상 수업과 업무를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지만..." <'따뜻한 동행' 장애인 전 통솔체어 지원> (내일신문 2010.11.11)
장애인을 이질적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표현	"이 교수는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최영씨 에기를 쓴 게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목 서울대 교수, 일로려고 글 쓸 수 있는 IPTV 개발> (국민일보 2011.04.11)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전신마비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장애 극복 '한국판 호킹', 9년만에 감동의 졸업장> (SBS TV 8뉴스 2011.02.28) "지적장애 3급으로 일반인처럼 몸이 성치 않지만..." <점시 뒀는 장애인 봉사자 박병조씨> (뉴스 2010.4.24)

장애인에 대한 비하용어와 올바른 표현		
장애인 비하 용어	올바른 표현	
정상인(장애인의 반대)	비장애인	
애자, 상애자, 불구자, 지적부자유자, 병신, 불구, 폐질자	장애인	
안운병이	지체장애인	
절름발이, 절뚝발이, 꺾뚝발이, 꺾뚝이, 썸마, 반신불수	지체장애인	
외다리, 외발이, 외팔이, 굼벵이	지체장애인	
조막손, 육손이	지체장애인	
번머리, 귀머거리, 아다다, 말더듬이, 아자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장님, 소경, 앵구, 풍사, 맹자, 앵구, 앵구눈, 외눈박이, 사팔뜨기, 사팔	시각장애인, 저시력장애인	
꿀추, 꿀추, 꿀사슴치	지체장애인	
정신박약아, 정박아, 등신, 도라이, 백치, 바보 천치, 열간이, 멍	지적장애인	
미처광이, 정신병자, 미친사람	정신장애인	
말짚보, 난쟁이	지체장애인(저신장장애)	
인형이, 인형선생, 껌보	언어장애인	
배넛병신	신원성 장애인	
혹부리	안면장애인	
문둥이, 나병환자	한센인	

업, 직장별, 직책, 나이, 주거지 등 필요한 정보만 소개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앵글의 초점은 어디에

사건이나 TV뉴스의 영상에서도 '장애'를 과도하게 부각시킨 경우가 있다. 지난해 2월 양익준씨 신일 검사 입관식 보도가 대표적이다. '항반신 마미 극복한 양익준 검사 (연합 2010.2.8)'와 '하 반신 마미 이긴 검사' (뉴스 2010.2.12) 기사에 실린 사진은 휠체어가 지나치게 부각되었다. 새로 입관된 검사로서의 기쁨과 그의 꿈, 포부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의 얼굴과 눈빛을 볼 수 없었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물론 장애인보장구나 장애상대는 장애인이 처한 현실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정신적 가치와 그의 능력 그리고 휠체어가 아닌 그의 얼굴과 제스처에 앵글의 초점을 맞출 수도 있었을 것이다.

'기적의 외다리 비보이', '외팔댄서', '업지공주' (저신장장애인) 등은 장애인을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 재목이나 별명으로 사용했던 표현이다. 예초이 같은 표현은 장애 극복의 미담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 역시 당사자의 능력이나 내면

의 욕구와 사고 등은 무시되고 장애만 부각시켜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에 대한 인식의 틀 바뀌어

언론인들이 의도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하려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다만 무엇이 장애인을 위한 표현인지 분명하지 않거나 기자도 의식하지 못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일부 잘못된 표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 인권 보도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를 '다름'이나 '개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장애인도 장애인이기 이전에 인간을 가진 인간 그 자체라는 인식이 그 출발점이 아닐까?

<공동취재팀>

김성후 기자협회보 기자
kshoo@journalist.or.kr
박광우 국가인권위 홍보협력과 사무관
pkw@nhrc.go.kr
김언경 방송특별포럼 사무국장
true4731@naver.com



"이...이렇게...얘기하니까 힘...힘들어 보이죠. 저는...하나도 안 힘들어요. 사...사람들의...생각일 뿐이죠." 말할 때마다 고개를 옆으로 젖히고 입술을 어렵게 떼자 '힘든가 보다' 싶어 말하리를 꺾은 기자는 부끄러워졌다. "장애인권 문제도 마...마찬가지예요. 당사자 관점으로 바라봐야 해요. 장애인을 많...많이 만나고 세심히 보고 귀 기울여 듣는 게 중요하니까." 백수정 서울YMCA 어린이영상문화연구원 미디어교육팀장은 이메일로 보낸

“기자들 인권 감수성, 아직 초보 수준”

백수정 서울YMCA 어린이영상문화연구원 미디어교육팀장

인터뷰 질문에 A4 11장의 답신을 보내왔다. 그것도 전날 파곤해서 그 분량밖에 못 보낸 것이라고 했다. 22일 오후 경기도 부천 송내역 인근 카페에서 만났다. 미국 캘리포니아 노트리지 주립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장애를 가졌다. 1999년 서울YMCA에서 어린이프로그램 전문 모니터를 시작으로 시청자 시민단체 활동과 인연을 맺은 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방송모니터단에서 7년째 장애인권 보도와 관련한 교육과 연구를 해오고 있다.

“어떤 보도들이 문제가 있나.”

“장애인 성공스토리를 다루는 기사에서 흔한데, 장애를 너무 부각시킨다. 장애로 인한 불편함에 초점을 맞추고, 사소한 휠체어 등 보조기구에 주목한다. 있는 장애를 드러내는 것은 좋지만 극적 요소를 위해 억지로 부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담은 보

도가 많이 사라지지 않았다.

“비장애인인 장애인에게 발을 떠먹여 준다거나 정치인이나 기업인의 이미지 홍보에 장애인을 둘러싸 세우는 보도는 줄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관점에서 진화하지 못했다.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의 권익에 관한 기사보다 미담이나 행사, 성공담으로 많은 지면이 할애된다.”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표현이 반복되는 이유는.

“장애자가 아니라 장애인이며, 장애인의 반대말이 정상인이 아닌 비장애인임을 수년간 알려왔지만 언론의 보도는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다. 머리로만 기사를 쓰고 관행에 기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시스템이 잘못된 표현을 반복하는 요인이 아닐까 한다.”

“장애인권 보도에 모범적인 매체가 있다면.

“요즘 장애인 신문사들의 활동이 활발

하다. 기존 언론에 비해 장애인 문제를 장애인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알리는 데 적극적이다. 장애인 전문 방송국이나 KBS 제3라디오 같은 채널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자들의 인권 감수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

“개인이자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아직 초보 수준이다. 특히 장애인, 노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은 일반 대중과 거의 비슷하다. 기자들의 인식은 고스란히 기사에 반영돼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기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모니터를 하면서 느낀 점은.

“기자들의 의식 속엔 장애인은 장애인 일 뿐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 장애인 관련 보도에서 가장 먼저,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장애부분’인 것을 보면 말이다. 하지만 장애인은 장애인이기 전에 사람이고 감정이나 사고, 개성이 있는 비장애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간이다. 장애인과 많이 만났으면 한다.”

“기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끄는 1차 매체는 언론이고, 그 중심에 기자가 있다는 긍지와 소명의식을 가져달라.” 공동취재팀

(25.0*13.8)cm

외국의 가이드라인과 법률

‘미미시스터즈’ KBS 방송 불가...BBC·NHK라면?

최근 KBS가 자체심사에서 그룹 미미시스터즈의 데뷔 앨범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크라잉넛과 함께 부른 ‘미미’라는 곡의 가사 중 ‘당신을 만난 순간 꿀 먹은 방어가 되었네’라는 부분의 ‘방어’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미미시스터즈의 소속사 핑거핑크레코드는 “다른 방송사에서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이 왜 유독 KBS에서만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인지 궁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누리꾼들도 이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장애인권에 대한 KBS의 공영방송다운 면모와 함께 우리나라가 장애인권을 위해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다.

외국의 경우 영국 BBC 가이드라인이 단연 눈길을 끈다. BBC는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까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불구자(Handicapped)라는 표현보다 ‘장애가 있는 사람’(People with Disabilities)이 최상이라는 것. 또한 ‘~가 불구인’(Crippled with), ‘~의 희생자’라는 표현 대신 ‘~한 사람’(a person who has)을, ‘휠체어에 의지’(Confined to a wheelchair) 대신 ‘휠체어를 이용’이라고 쓰면 좋하다는 등.

일본 NHK도 장애인에 대해 주의할 표현과 함께 장애인의 인권을 배려해 본인이나 가족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만한 영상은 피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미국 방송법은 장애가 이야기의 중심이 아닌 이상 장애에 초점을 맞추지 말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취재팀

(10.5*13.8)cm

〈한국기자협회·국가인권위원회 공동기획 캠페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권보도가 만든다 〈2〉_성평등 보도

(기자협회보 20100504)

기자협회보

2011년 05월 04일
 05면 (기획)

“성역할 고정관념 깨는 보도 많아야”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지난해 9월 초 SBS 8시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추석 차례상 준비’ 기사로 기억하는데, 남성 기자가 직접 장마 구니를 들고 장을 보면서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물가를 비교하더군요. 장은 늘 여성이 본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보도였습니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남성 기자가 직접 장을 보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처음이라 인상 깊었다”며 “여성은 집안일, 남성은 바깥일로 구분 짓은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고정화를 켜 뉴스였다”고 말했다.

1998년 2월 한국여성민우회 부설단체로 발족한 미디어운동본부는 미디어 정책 감시 및 모니터링, 교육, 여성연예인 인권보호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취임한 윤정주 소장을 2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위치한 미디어운동본부 사무실에서 만났다.

-어떤 매체를 모니터하고 있나.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이다. 케이블방송을 대상으로 지난 2007년 5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격월로 ‘이달의 나쁜 방송프로그램’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부터는 지상파에 대한 감시활동을 한다. 종합편성채널 등장으로 생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방송 시장에서 지상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방송 뉴스에 나타나는 보도의 문제점은.

“주요 뉴스의 경우 남성 앵커가 소개하고 남성 전문가의 인터뷰가 많다. 여성과 관련된 뉴스는 ‘여성 1호’ 소개 기사나 여성이 피해자로 나오는 내용들이다. 성폭행범에 대한 뉴스를 전하면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클로즈업해 보여준다. 마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니까 성폭행을 당한다는 식이다. 여성스포츠 선수들에게 붙는 별칭도 성차별 요소가 많다. ‘요정’, ‘흑진주’, ‘여왕’ 등은 여성선수들을 실력 있는 전문가가 아닌 외모로 평가하는 표현들이다.”

-우리나라 언론의 성평등 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

“미디어운동본부가 2010년 방송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은 2008년 보고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여성 앵커는 주변 뉴스를 다루고, 전문가 인터뷰는 남성이 주도 하며, 여성은 시건의 복직이나 일반 시민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경향이 반복된다. 오락프로그램의 경우 ‘여성은 연약함, 남성은 강함’ 등의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긴다.”

-성평등 의식이 부족한 보도나 프로그램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일부러 성차별적인 보도를 하겠나? 그런 보도를 하고도 성차별인지 아닌지 모른다. 성평등 감수성이 낮은 것이 문제다.”

-성평등 감수성은 어떻게 키울 수 있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금만 눈을 뜨고 귀를 열면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인권교육과 더불어 성평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면 좋겠다. 카메라 감독들에게도 여성의 신체 일부를 클로즈업하는 화면의 문제점을 일깨워야 한다.”

-기자나 제작자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여성과 관련된 기사를 많이 발굴했으면 한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답답해야 할 뉘를 다루는 기사 등이 필요하다. 성별 고정관념을 깨 수 있는 기사가 많아야 한다. TV의 경우 화면을 구성할 때 여성의 신체를 부각하는 선정적인 장면을 지양해야 한다.”

기자협회보

2011년 05월 04일
05면 (기획)

여성이 권위자로 상품을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하면서 업무공간을 배경으로 전문가의 모습을 드러낸 광고가 있을까? 지난해 9월13일부터 일주일간 지상파방송 3사의 주시청시간대에 제공된 TV광고 2천46개를 분석한 결과 단 한건도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여성민우회에 의뢰해 제출받은 '2010 방송모니터링 보고서-젠더에 관한 고정관념, 그리고 차별'의 일부 내용이다. 그만큼 여성인물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영된 묘사가 뿌리 깊다는 방증이다.

광고를 통해 성별 고정관념을 극대화한 인물군을 사례별로 보면 우선 여성은 △내 아이의 건강은 내가 지

광고 속 여성과 남성
짧은 시간 강력한 '차별' 메시지

킨다 △임마에겐 자녀가 우선 △내조하는 아내 △함께 있어도 집안일은 여성 몫 △여성의 품을 활용한 상업주의 △여성은 젊고 예뻐야 한다 등이다. 반면 남성은 △강한 남성 △권위자로서의 남성 △사람의 대표적 성(姓)으로서의 남성 등으로 묘사되었다.

고정관념을 넘어선 성평등 인물군 광고도 있었다. 음식을 조리하는 신세대 남성, 육아에서 이바의 역할을 감조하거나 공동육아의 주체로 등장한 엄마와 아빠, 여자친구를 위해 발도 짓고 설거지도 하는 남성 등이다. 또 씩씩하게 걷는 진취적 여성,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의 대표성을 맡아 가진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성평등적 광고에서도 출연한 인물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우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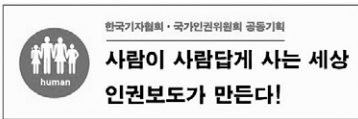
광고는 짧은 시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특성 때문에 고정관념에 의존하기 쉬운 장르로 알려져 있다. 강력한 메시지만큼이나 파급효과도 크다는 점에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1*6.1)cm

기자협회보

우리와 다르다고 차별할 수는 없다

국내 거주 외국인 130만명 육박...다문화 시대 언론 역할 중요



〈3〉이주인권 보도

이제 다문화는 대체다. 군대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국방부가 대통령령인 군인복부규율을 다문화시대에 걸맞게 바꿨다.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이하 생략)"로 시작하는 군 입대자와 장교 입관자의 선서문에서 '민족'을 '국민'으로 변경했다. '다문화장병'의 증가에 대비한 조치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이 1백26만명을 넘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많은(多)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진입했다. 정부도 정책과 사업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많은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통화와 흡수, 통제와 관리 중심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국민들의 인식도 마찬가지다. 언론의 역할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살색’은 없다

지구상에 살색은 없다. 인종에 따라 피부색이 다르므로 특정인이 살색일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황인종의 피부색을 살색으로 사용했다. 이 표현이 사라진 것이 2002년 11월이다. 기술표준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크레파스와 수제제품을 지원하는 한곡산업규격(KS)을 개정할 것. 인권위는 당시 '살색'은 특정 색깔의 피부색을 가진 인종에 대해서만 사실에 부합하며, 황인종이 아닌 인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황인종의 피부색을 '살구색'이 KS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 보도에는 아직도 살색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오른쪽 어깨와 허리 부분을 살색으로 표현해..."(김연아, 지질 의상 공개 '어깨 과감 노출' 성속미 강조)(서울신문, 2011.4.29)

"시인의 푸른 피부는 원래 살색이며, 금발 머리는 원래 보라색이다"(몸에 그리고...꼭고...한 장르를 너무 좋아)(중앙일보, 2011.4.19)

유색인종, 표현이란 표현도 경우에 따라 대표적인 인종차별적인 표현이다. 유색인종은 백인 중심의 시각으로만 틀어지던 용어라는 점에서 그렇다. 흑인 역시 마찬가지다. 나이저리안인 등 국적을 표현하거나 굳이 인종과 국가를 밝힐 필요가 없을 때는 이름만 쓰고 국적을 알 수 없을 때는 외국인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흑염소, 흑진주 등 유색 흑인에만 붙여나 흑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차별적 표현일 수 있다. 스포츠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용병이란 표현도 정확한 묘사가 아닐뿐더러 사람을 사고 파는 물건 취급하는 것이다. 외국인 선수라는 표현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흑진주' 윌리엄스, 코드 투키 채비〉(한국일보, 2011.4.13)
〈'부진한 용병투수들' 양승호 감독, '교체해 밀어'〉(세계일보, 2011. 5.1)

외국인 노동자 구제역 검역 경로?

올해 1월1일 시행된 개정 국적법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주요 대상은 국가경쟁

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우수인재로 한정했다.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정, 한국 거주 화교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문화사회의 이중성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외국인 노동자나 중국통조 등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거나 전염병의 원인제공자로 몰아가는 것은 그 연장선이다. 일부 언론은 무비판적으로 이를 보도하고 조장한 경우도 있다.

먼저 작년 말 구제역으로 축역을 치른 상황에서 전염병에 대해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목했고 언론은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 발생 농장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농장주들에 대한 출입국 시신을 파악해 검역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한우연호도 구제역 발생 비상...확산 방지 총력)(SBS, 2010.11.30)

「법무부, 구제역 차단 위해 외국인노동자 이동 자체 당부」(YTN, 2011.1.28)

이에 대해 우희중 서울대 교수(수의학과)는 지난 1월12일 국회에서 열린 '구제역 사태 대안 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유성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며 '베트남에 다녀온 농민'을 검역경로로 지목하는 등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언급을 할 수 있다는 데 총력을 받았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할 많은 부분을 집어낸 집단에 근거 없이 막연히 정가, 발병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느껴져서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결핵이 유행이라는 보도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외국인 노동자의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경우도 있다. "특히, 안산시의 경우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도 학교에서 결핵이 대규모 발생했기 때문에, 공장이 많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이 원인은 아닌지,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안산에서 고교생 결핵 집단 발병)(YTN, 2011.4.15) 반면 이 사건을 보도한 다른 언론은 외국인 노동자 관련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집재적 범죄자 취급 빚기

지난 3월22일 보수단체 간부 모친 살해사건 보도에서도 일부 언론은 성급하게 중국통조라고 언급한 경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냈다.

〈'비비언할' 간부모친 피살음의자 조선희 가능성〉(뉴스스, 2011.3.22)

〈보수단체 간부 어머니 피살사건...40대 조선희이 음의자〉(조선일보, 2011.3.23)

그러나 며칠 후 검거된 용의자는 중국통조가 아니었다. 한국일보의 '기자의 눈' 〈보수단체·언론의 '지레 짐작'〉(2011.3.24)을 통해 이 같은 언론의 보도행태를 질타했다.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보도도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교도소 수감자 중 누가를 더 신뢰할 수 있을까? 고용자의 인식과는 별개로 언론이 고용관련 보도에서 굳이 이런 비교를 언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수감자들이 직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에는 중소기업체들의 결단도 한몫 했다. 인양에서 창고업을 운영하는 오씨는 행사에 참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 오씨는 '출소자에게 물품청고 키를 통째로 맡겨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식자재 창고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어 구인난에 시달리던 오씨는 결국 수감자를 믿어보기로 했다. 오씨는 행사장에서 7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인양교도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국민일보, 2011.5.3〉

외국인 범죄에 대한 보도도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 대해 '무법천지', '성범죄 천국' 등으로 표현한 언론 보도가 대표적이다. 2009년 기준 외국인

범죄율은 2%로 내국인 범죄율 4.1%보다 낮은 수준이다.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예컨대 1명의 유학생이 체류기간을 넘겨 미등록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보도한 〈유학생 경정적 유치 외국인 범죄 양산〉(강원도민일보, 2010.3.24)은 지나친 확대해석일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주여성문제기 전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지나치게 이주여성을 가혹통합적이고 한국에 동화시키는 방향으로만 나아가고있는 겁니다. 미디어 등에서 이주여성의 인권문제보다는 '비밀취직 한국 머느리' 되기에 초점을 맞추곤 하는 점도 아쉽습니다."

지난 2007년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주는 비취미 여성대상 '헤리상'을 수상한 한국이주여성인센터 한국업 대표가 한겨레와 했던 인터뷰 내용의 일부다. 다문화를 주장하면서 '한국식 머느리 미화'에 열을 올리는 이윤배반적인 언론의 보도태도를 지적한 것인데 이는 최근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청차남은 베트남 출신 '올신상'〉(연남, 2010.12.4)
〈이주여성들 새해맞이...우리도 '한국 머느리'〉(MBC, 2011.1.27)

〈'제 이름은 '비디진'입니다'〉(뉴스스, 2011.3.8)
반면 〈캄보디아 신부 성기 절단...얌인 농고 의견 분분〉(MBN, 2011.2.10), 〈'캄보디아 신부'도 한국 남편에 살해됐다〉(문화일보, 2011.3.23) 등 결혼이주여성의 폭력과 관련된 보도는 다소 선정적이거나 현상 위주라는 비판도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아동에 대한 일부 보도는 동정적인 시선이 반영된 경우도 있다. 일종의 특별한 대우다. 하지만 그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한다면 특별 대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불법체류자’ 용어가 농친 것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령에 의해 체류기간이 정해진다. 그런데 이 체류기간을 넘겼거나 이에 체류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불법체류자라는 용어에 대해 이주인권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 용어는 '불법=법불=범죄자'란 뜻식으로 확대되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는 표현이라는 것. 체류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은 형사범이 아닌 행정범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미등록 외국인'이란 표현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유엔을 국제인권사회도 불법체류자(Immigrant) 대신 미등록 외국인(Undocumented Migrants)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언론은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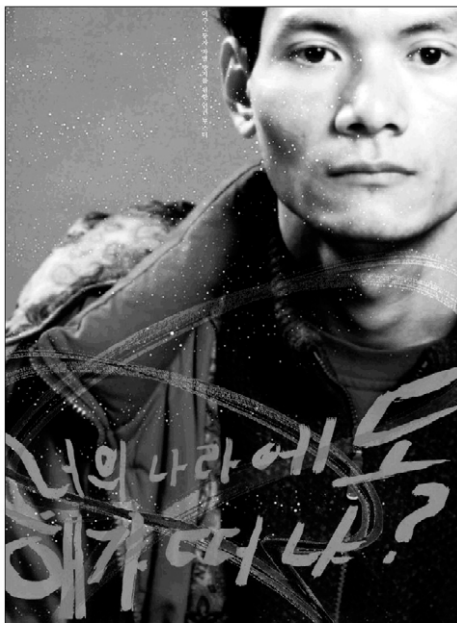
〈불법체류자 많은 국가 수출 중단〉(서울신문, 2011.5.2)
〈비자만 외국인 노동자 넷중 하나 불법체류〉(연남, 2011.4.29)

〈살의 안 입히고 수감 채워...인권없는 불법체류자 단속〉(국민일보, 2011.4.26)

사실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함정은 인권이다. 불법체류자란 용어로 인해 외국인을 체류자격의 틀에 가두는 순간 그들이 겪고 있는 폭력이나 차별, 건강권, 그리고 이주아동의 교육권 등 인권문제는 점근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공통취재팀〉

김성후 기자협회보 기자 kshoo@journalist.or.kr
박병우 국가인권위 홍보협력관 사무관 pkw@nhrc.go.kr
김언정 방송특별팀 사무국장 true4731@naver.com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70만명으로 추정된다. 만리타향 낯선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들은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안상수씨가 그린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포스터 '너의 나라에도 돌아가느냐?' (국가인권위 제공)

주의해야 할 이주인권 관련 보도 사례	
구분	사례
인종차별적 언어 표현	"특히 오른쪽 어깨와 허리 부분을 살색으로 표현해..."(김연아, 지열 의상 공개 '어깨 과감 노출' 성숙미 강조)(서울신문, 2011.4.29) "사진의 푸른 피부는 원래 살색이며, 글썽 머리는 원래 보라색이다"(<물에 그리고...>...꼭고...한 장르는 너무 좋아)(중앙일보, 2011.4.19) "짧은 치마에 살색스타킹, 저도 입고 싶지만..."(엔다리로 다니는 계절, 하지정맥류 보일리)(마이널셀뉴스, 2011.4.18) <가려도 묘해-기회의 '살색' 착시의상>(머니투데이, 2011.1.25) <레드카펫 신 흑진주 나오미 컴백>(뉴스, 2011.5.3) <'흑진주' 윌리엄스, 코트 뷁기 재비>(한국일보, 2011.4.13) <'부진한 용병투수를' 양승호 감독, "교체해 물어">(세계일보, 2011.5.1) <두산, 새 왕병 테르난도 영입>(연합, 2011.4.27)
외국인 선수에 대한 잘못된 표현	<두산, 새 왕병 테르난도 영입>(연합, 2011.4.27)
성급하게 외국인 노동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보도	"특히, 안산시의 경우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도 학교에서 결핵이 대규모로 발생했기 때문에 공장이 없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이 현인은 아닌지,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안산에서 고교생 결핵 집단 발병)(YTN, 2011.4.15) "방역 당국은 구제역 발생 농장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농장주들에 대한 출입국 사실을 파악해 감염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한우에서도 구제역 발생 '비상'... 확산 방지 '총력')(SBS, 2010.11.30)
종교동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도한 사례	"경북 군위의 농가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지난 3일 연천의 돼지농장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로선 가장 의심스러운 대목이다"(<경북서 온 외국인 노동자 감염돼 돼지 '비상' 이상범 축산정책관 일문일답>(서울신문, 2010.12.16) <법무부, 구제역 차단 위해 외국인노동자 이동 자택 당부>(YTN, 2011.1.28) <보수단체 간부 모친 상해증의자 조진욱인 듯>(연합, 2011.3.22) <아버지연합' 간부모친 피살증의자 조진욱 가능성>(뉴스, 2011.3.22) <보수단체 간부 어머니 피살사건...40대 조진욱이 증의자>(조선일보, 2011.3.23)
외국인 노동자를 교도소 수감자와 비교하여 부정적으로 보도한 사례	"수감자들이 직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에는 중소기업체들의 정반대 반목했다. 안양에서 청고업을 운영하는 오씨는 행사에 참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 오씨는 "출소자에게 용류장고 카를 통해 맡겨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식자재 상고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어 구안남에 서달라던 오씨는 결국 수감자를 받아보기로 했다. 오씨는 행사장에서 7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안양교도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국민일보, 2011.5.3))
외국인 범죄를 확대 해석한 보도사례	<유학생 경쟁적 유치 외국인 범죄 양산>(강원도민일보, 2010.3.24)
불법체류자 표현 보도사례	<불법체류자 많은 국가 수출 중단>(서울신문, 2011.5.2) <비자만료 외국인 노동자 1천명, 불법체류>(연합, 2011.4.29) <상의 안 일하고 수간 채워져...인권없는 불법체류자 단속>(국민일보, 2011.4.26)

기자협회보

2011년 05월 18일
05면 (기획)

“이주노동자 현장 목소리 찾기 힘들어”

고기북 용인이주노동자쉼터 대표



“이주노동자들도 부모가 있고, 자식을 둔 한 집안의 가장이에요. 피부색만 다르지 통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고기북 용인이주노동자쉼터 대표는 “보태거나 빼지 말고 이주노동자의 애환을 담담하게 다루는 보도가 많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7년째 이주노동자 상담 업무 등을 하고 있는 그는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고기북의 이주노동자 이야기'를 연재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우리 사회의 불편한 시선에 대해 발언했다. 외국인이주노동자연합회 대표, (사)한국해외봉사단연합회 이사장도 맡고 있는 그를 12일 오후 서울시 중구 태평로 한국기자협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주노동자 관련 글을 쓰는 이유는.

“이주단체가 진달하려는 이슈들이 언론 보도에 잘 나오지 않는다. 우리의 뜻과 다르게 왜곡되게 진달하는 경우도 있다.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내보내고 시작했다.”

- '이주노동자' 표현이 조금은 낯선데.

“외국인이라는 단어는 내·외국인을 구분하고 차별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유엔이나 세계노동기구(ILO)는 외국인노동자(Foreign Worker)보다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라고 한다. 대부분 언론에서 쓰는 '불법체류자' 용어도 문제가 있다. '불법'이라는 단어는 형사범이라는 뉘앙스를 준다. 체류기간을 넘겼거나 체류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은 형사범이 아닌 행정범이다. 그런 면에서 '비등록 외국인'이라고 써야 한다.”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는 70만명으로 추정되고 그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18만~19만명이다.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언론 태도는 어떤가.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옮겨가면서 다문화에 이해하고 보듬는 보도나 TV 프로그램이 눈에 띄게 늘었다. 하지만 일부 균형 잡히지 못한 보도는 여전히 있다. 지나치게 동정적이거나 어두운 부분만 부각해 쓰는 경향이 있다. 사진 찍을 때 다문화 자녀임을 드러내기 위해 티 나는 아이들만 골라서 찍기도 한다.”

-시례를 들어 얘기해 달라.

“최근 KBS에서 다문화부부를 다룬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결혼 생활 9년차인 한국인 남편과 중국인 아내가 불화가 있는데, 주위의 도움으로 서로의 오해와 상처를 풀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들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다. 중국인 아내의 어눌한 한국어 말투는 '9년이나 살았는데 한국말을 못하는 핑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준다. 중국어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게 하고 자막을 넣는 배려가 필요하다.”

-언론 보도가 결혼이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다문화는 말뜻 그대로 다양한 문화, 다양한 구성원을 얘기한다. 하지만 우리의 다문화에는 결혼이주인만 있고 이주노동자나 난민은 없다. 정부 정책이나 지원도 솔림 현상이 심하다. 이주노동자 자녀는 다문화기정지원법의 혜택을 못 받는다. 절반 이상의 이주노동자 아이들이 중도에 학교 공부를 포기한다. 다문화라고 말하지만 실재는 우리끼리 문화가 된 셈이다.”

-언론에 비리는 게 어디엔.

“인터뷰 기사를 보면 대개 유명인이나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들이 주로 나온다. 하지만 그들 이야기는 일정 부분 경형화됐고, 자기 경험을 일반화해서 말한다. 이주노동자의 고단한 삶이나 억울한 사연을 접하려면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은 이주노동자를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야 한다.”

(25.1*14.2)cm

다문화사회 정책 과제

인권위,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를 넘는 우리나라 외국인 비율이 2020년에는 5%, 2050년에는 9.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증가하고, 정부의 이주민 정책은 인권기반성과 인권친화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이주정책에 인권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3개 분야다. 먼저, 이주노동자의 기본권과 그 가족의 인권 보장, 이주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예방 방안이 그것이다. 이주노동자 가족의 의료권과 자녀의 교육권 보장 방안도 마련한다.

둘째, 결혼이주민의 인권. 작년 말 기준으로 14만여 명에 이르는 결혼이주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그 가족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인신매매라고까지 비판받고 있는 일부 국제결혼과정에서 개선 대안도 과제다.

셋째, 난민과 무국적자의 인권. 우리나라는 1994년 난민협약을 비준했으나 그동안 소극적인 난민정책을 폈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총 222명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가운데 신청 절차의 복잡성과 장기간 등이 2007년 유엔으로부터 지적받기도 했다. 따라서 난민인정 절차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난민 신청자와 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체계 마련 방안 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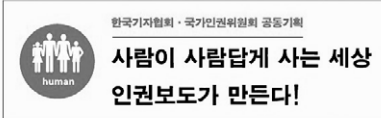
한편 인권위는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지속적인 이행모니터링을 펼친다. 모니터링 범위에는 정책과 제도 와 함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보도도 포함될 예정이다.

(10.4×14.7)cm

기자협회보

나이·性的 지향 지우면 사람이 보인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개인·가정문제로 치부하지 말아야



〈4〉 노인·어린이·성소수자 인권보도

“고령사회의 그늘은 앞으로 올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5월17일에 게재한 조선투스크 “늘어나는 노인 분포비율”은 노인법정의 중요한 원인을 ‘분도’로 분석하며 우리나라 노령사회의 한 단면을 날카롭게 보여줬다. 그러나 노인(법정)들이 우리 사회의 부딪이며 그늘이라는 문제점이 크게 부각된 반면 대안 제시는 부족했다. 특히 노인문제를 효도를 통해 가정에서 해결하라는 듯한 언급은 논란거리다. 함열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인 문제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적인 한계와 문제, 개선방안 제시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고령사회는 ‘그늘’인가

노인문제를 사회적 부담이나 사회의 대치원에서 접근하면 인권을 간과하기 쉽다. 1991년 12월16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의 독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존엄성 등이 그것이다. 노인문제를 인권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거시적으로 정책과 제도적 차원의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언론 보도도 이런 맥락에서 풀어야 한다.

노인시설의 인권문제도 언론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다.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일본 사회복지법인 대표의 발언을 보도한 국민일보 “동화원” 하시모토 원장 “커튼 안치고 지켜줘 가는 등 한국의 노인요양시설 충격적” (2010.11.11)은 우리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보도에서 하시모토 원장은 “한국의 노인요양시설을 돌아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며 “한국의 노인요양시설은 형사 처벌감이다”고 말했다.

〈불이 김선달도 놀린 영사기〉(국민일보, 2011.5.11)
〈‘억 투지 몇 배로’...노인 울린 유전 사기〉(SBS, 2011.5.12)
〈지식 잘 된다’ 노인 상대 뒤통수 때기〉(YTN, 2011.5.6)
“작성 범죄의 대상은 다양하다. 그러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사건 보도에서 ‘노인은 속기 쉽다’, ‘노인은 판단력이 나빠 약하다’ 등을 강조할 경우 노인은 현재의 사회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누군기에게 집이 되는 의존적인 이미지를 부추길 가능성이 커진다. 노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또 노인 관련 기사에서 노인을 지나치게 주변인물로 그리거나 수동적 이미지만 부각되지 않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에게 상처 주는 보도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자 존중해야 할 존재다. 정서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언론 보도에서 어린이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장면 기사화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가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방송하는 뉴스에서 폭력적인 범죄 장면이나 흥기, 끔찍한 재연 등을 보여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MBC 뉴스데스크(2010.12.28)는 교통사고 보도에서 행인이 눈길에 CCTV 화면과 가로등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화면을 여과없이 방송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지난 5월15일 MBC 뉴스데스크는 또 각박함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일부 모자



〈삽화=강우근〉

이크 처리했지만 폭력·살인 장면이 그대로 방송돼 방청들의 위와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어린이를 인터뷰할 경우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 물자 폭력 성희롱 피해 ‘심각’〉(EBS, 2011.5.20) 기사에서는 어린이 두 명을 인터뷰했는데 모자이크 처리 없이 뒷모습을 촬영하다 열열함이 비춰지거나 모자이크 처리가 미흡해 이는 사람들을 충분히 누구인지 알지 못할 수 있을 정도였다. 어린이 인터뷰를 할 때에는 어린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신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린이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 “버려졌다”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일간지 신춘문예 수필부분에 당선된 작가이기도 한 강씨는 성당에서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의 가슴 시린 아픔을 알게 됐다.”(일일야 8명 키우지만 불린함 없어요)(세계일보, 2011.5.10)

“이곳에서는 세상이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나 부모가 있어서 함께 지낼 수 없는 아이 39명이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매체 앞둔 성남 ‘천사의 집’ 아이들 ‘39명 생일’ 막아주세요)(코리아일보, 2010.2.20)

“뜨거운 감자” 동성애

성적 소수자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2006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2007년 10월 법무부가 임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미 2001년 시행된 인권위법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인 ‘성적(性的) 지향’이 포함된 것에 대해 기독교계 등이 반발한 것이다. 결국 당시 정부는 ‘성적 지향’이 삭제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17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고 이법안 정부 들어 이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적 지향’ 포함여부가 논란거리다.

사람은 ‘성적 욕망의 성향’인 성성(性性, Sexuality)이 있고,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다수자의 성성은 이성이다. 인간의 연애와 사랑, 성에 대한 제도가 대부분 이성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적소수자(Sexual Minority)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 나이가 성적소수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다.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소외는 그 연장선이다. 인권보도는 어떻게?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동성연애자 혐오에 맞서 키스하기, 처벌에 항의하는 퍼투의 동성연애자 단체 시위입니다.”(이탈리아 총리 성매매 의혹 ‘루비’ TV 광고 등장 외)(MBC, 2011.2.15)

국어사전에 ‘연애’는 ‘남녀가 서로 애뜻하게 그리워하고 사랑함’이다. 성적소수자인권단체들은 ‘연애’를 사랑을 진지한 감정이 아닌 다소 가볍게 묘사한 단어라는 점에서도 언론에서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동성애를 연애의 차이으로 국한시킨다면 동성애자가 갖는 삶의 다면성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 동성애에 대한 동성애, 동성애자에 표현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적 지향’, ‘커밍아웃’ 의미는?

〈美연방법원, 軍 ‘성적 취향’ 공개금지 규정 현행법 폐기 판결〉(뉴스스, 2010.9.10)에서 사용한 ‘성적 취향’이란 표현도 ‘성적 기호’, ‘성적 선호’와 함께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취향, 기호 등은 한 개인이 참으면 해결되거나 남에게 방해물 주지 않고 혼자서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적 지향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졸이라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아내도 제가 대학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커밍아웃 하고 철 회학식(2010.12.16)을 찾았습시다.”(삼태도 젊음의 한류분입니다)(연합뉴스, 2011.2.10)

“어땠든 재미있는 것은 그가 이제는 ‘수색조합’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광고로게도 에드워드 권의 의

주의해야 할 노인인권 관련 보도 사례	
구분	사례
제도적인 접근이 부족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 조장 사례	"고령사회의 그들은 앞으로 올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길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다."(조선데스크-늘어나는 노인 분 노병최)(조선일보, 2011.5.17) <"1억 투자시 몇 배로"...노인 돌봄 유전 사기>(SBS, 2011.5.12) <"자식 팔린다" 노인 상대 뺨다툼 사기>(YTN, 2011.5.6)

주의해야 할 아동인권 관련 보도 사례	
구분	사례
어린이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사례	각목 살인사건 보도(MBC 뉴스데스크, 2011.5.19) 버스 정류장 교통사고 보도(MBC 뉴스데스크, 2010.12.29)
인터뷰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	<초등학교 문지마 폭력 성희롱 피해 '심각'>(EBS, 2011.5.20)
임양아, 사설 아동들에게 상처를 줄 우려가 있는 표현	"일간지 신춘문예 수필부분에 당선된 작가이기도 한 강씨는 성당에서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의 가슴 사린 아픔을 알게 됐다."(임양아 8명 카우치만 플랜팅 없어요)(세계일보, 2011.5.10) "이곳에서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나 부모가 있어도 함께 지낼 수 없는 아이 39명이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매세 앞둔 성남 '원시의 집' 아이들 "39명 생이별 막아주세요")(동아일보, 2010.2.20)

주의해야 할 성적소수자 인권 관련 보도 사례	
구분	사례
성적소수자를 비하하거나 잘못된 개념의 용어를 사용한 사례	<안젤리나 졸리, 피트 닉두고 동성연애 시작?>(동아일보, 2011.5.9) <동성연애자 청소년년 신예 살해현황>(레얼드경제, 2011.5.11)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동성연애자 혐오에 맞서 키스하기, 차별에 항의하는 세무의 동성연애자 단체 세워입니다."(이탈리아 총리 성매매 의혹 '루비' TV 광고 등장)(MBC, 2011.2.15)
더어의 뜻을 왜곡하여 편견을 강화하는 표현	"그동안 대졸이라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아내도 제 대학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커밍아웃' 하고 질 투학사였던 모교를 찾아왔습니다."(성매도 절충의 현부분입니다)(연합, 2011.2.16) "아빠든 재미있는 것은 그가 이제는 '우식졸업'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공교롭게도 예드워드 권의 의혹 이후다. 저, 다음엔 누가 커밍아웃' 할 것인가(박찬일의 음식잡설 ①한국 스타 셰프의 허와 실)(중앙일보, 2011.3.08)
동성애 혐오에 가까운 표현이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한 사례	<사실 - 인생은 아름다워'와 방송의 품위>(국민일보, 2010.10.25) <김급진단 '동성애' '동성애 유혹'을 구원으로 대체시키자?>(국민일보, 2010.11.30)

속 이우다. 저, 다음엔 누가 커밍아웃' 할 것인가(박찬일의 음식잡설①한국 스타 셰프의 허와 실)(중앙일보, 2011.3.08)

커밍아웃의 원래 의미는 '사교계에 데뷔하는 것'이었으며 현재는 '동성애자가 자신을 긍정하고 당당하게 성적정성을 밝히는 것'이란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이를 거짓말을 고백하는 의미로 쓸 경우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 인생은 아름다워'와 방송의 품위>(국민일보, 2010.10.25)

<신앙과 건강·생육·번성' 기로막는 동성애 창조 설리 거스르는 사랑의 길>(국민일보, 2011.3.27)

일부 언론에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표현이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 세계적으로 1973년 미국 정신의학협회가 출간한 '정신질환에 대한 통계권람'(DSM)에서 동성애를 삭제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1993년 발간한 국제질병분류 ICD-10에서 "성적 지향은 정신적 장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기술했다. 아직 학계에서 동성애자 원인이 객관적으로 검증되거나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동성애에 대한 혐오는 자칫 차별과 인권침해일 수 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고 평등하다'(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조항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공동취재팀>

김성후 기자협회부 기자 kshoo@journalist.or.kr
 박광우 국가인권위 홍보협력과 사무관 pkw@nhrc.go.kr
 김언경 방송독립포럼 사무국장 truc4731@naver.com

기자협회보

2011년 06월 01일
05년 (기획)

“노인기사 천편일률...심층분석 필요”

박용기 희망도레미 이사

“노인 관련 기사가 천편일률적입니다. 특색 있는 기사가 없어요. 정부 통계자료를 인용하고 몇몇 전문가를 인터뷰해 ‘노인문제’가 심각하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식의 보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전문직 시니어들이 만든 사회적 기업 ‘희망도레미’ 박용기 이사는 “작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백20만명이 됐고, 2020년 쯤이면 1천만명이 되는데도 언론에서 다루는 노인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분야 인권감사사로 활동하고 있다.

“노인학대나 노인자살 등 특수한 사례만 보도합니다. 요양시설이나 산동네 쪽방에서 사는 노인들 사진도 단골메뉴로 등장하죠. ‘노인이 재산을 날렸네. 전화사기를 당했네’ 식의 기사들은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부정적 인식만 키우게 됩니다.” 그는 상당수 언론이 국민노인 문제를 전체 노인의 문제인양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상위, 보통, 국민계층 등 3등급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빈곤, 질병, 소외, 역할상실로 대표되는 4대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자리 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어요. 일자리가 생기면 역할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빈곤하지 않고 병도 없어집니다.” 그는 “노인들이 알고 싶어도 법과 제도가 뒷받침 안 돼 일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노인일자리 실태, 취업 현장 예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다루는 심층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취재팀〉

(11.1·14.0)cm

기자협회보

2011년 06월 01일
05년 (기획)

“언론에 의한 2차 피해 조심해야”

안수경 서울YMCA 어린이영상문화연구회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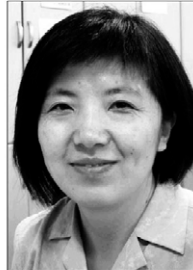
“어린이들은 기삿거리의 대상일 뿐입니다. 어린이 범죄사건이 발생했거나 어린이들이 어 떻다는 통계수치로 주로 보도되죠. 어린이들 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주거나 그들의 생각을 반영한 기사는 거의 없습니다.”

서울YMCA 어린이영상문화연구회 안수경 간사는 “분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뿐만 아니라 어른의 관점으로 기사를 쓰는 등 우리나라 언론은 전반적으로 어린이의 권리가 반영되지 않은 보도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를 특이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어른의 관점으로 어린이를 판단합니다. 예컨대 어린이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었다는 기사는 있어도 어린이가 쓰기에 적합한 스마트폰을 안내하는 기사는 찾기 힘들죠.” 그는 영국 BBC처럼 어른 뉴스를 쉬운 용어로 풀어 보도하고, 어린이 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에 의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어린이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사를 위해 어린이의 정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인터뷰를 하는 기자들을 간혹 봅니다. 특히 피해 대상이 어린이라면 사건을 다룰 때 흥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자들의 초기 실수는 피해 어린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 때문이죠. 후속 보도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점점 방송편성표에서 사라지면서 어린이들이 곱지 않은 프로그램을 볼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했다. “최소 인력과 제작비로 면피만 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청소년용 애니메이션을 수입해 일부 내용을 삭제한 뒤 어린이 시청용으로 내보내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고요.”



〈공동취재팀〉

(11.1·14.0)cm

기자협회보

2011년 06월 01일
05면 (기획)

“무심코 쓴 표현이 동성애 편견 강화”

한채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

“성소수자들도 신문과 잡지를 사봅니다. 한국사회가 어떻게 굴러가야 하는지, 어떤 사회가 됐을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성소수자와 관련된 기사를 다룰 때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독자들도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문화 활동 등을 통해 성소수자의 인권향상을 꾀하는 단체인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채운 대표는 “성소수자를 호기심으로 접근하거나 배척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사가 많다”면서 “성소수자도 사회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의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기사를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동성애에 빠져, 동성애를 즐겨 라는 표현들이 많아요. 동성애는 이미 잘못된 것이라는 전제를 한 표현들이죠. 동성애는 뭔가 다르고, 잘못된 것이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은연중에 풍깁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셈이죠.”

그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기사를 쓸 때 표현에 신경을 써달라고 했다. “얼마 전 한 레즈비언 커플이 연루된 살인사건이 일어나자 대다수 언론은 ‘잊나간 사랑의 비극적 결말’ 이라고 했습니다. 이성애자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면 ‘잊나간’ 표현은 안 썼겠죠.”

그는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을 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식의 보도도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해지고 있다”며 “작은 표현들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는 기사는 동성애 인권특집 기사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11.0·14.0)cm


(기자협회보 20110607)

기자협회보

‘알권리’ vs ‘인격권’ 사회적 합의 필요

기자에게 책임 지우는 현 시스템 문제...기협·인권위, 인권보도준칙 제정 추진

한국기자협회·국가인권위원회 공동기획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권보도가 만든다!**

- ① 장애인권 보도
- ② 성평등 보도
- ③ 이주민권 보도
- ④ 노인·어린이·성소수자 인권보도
- ⑤ 인격권 보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vs 개인의 인격권.’ 언론인들이 매 순간 맞닥뜨리는 고민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같은 조 제2항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되고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언론의 자유가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우월적 지위(1991년 헌법재판소 결정)이지만 언론으로부터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규정은 사후적이다. 특히 언론에 의한 법익 침해는 회복 불가능성이란 데다 심각성이 있다. 지난 1997년 헌법재판소는 “그 실정상 일단 침해된 후에는 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에 필요한 처분 등의 구제수단만으로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진보의 실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

사후구제라도 받을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마저 여의치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결국 언론의 뜻, 언론인의 책임이 크다.

인격권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생명, 신체, 건강, 명예, 성명, 초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대개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는 프라이버시 침해, 초상·음성·성명권 침해, 명예훼손 등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시정권고 사례와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하 인용할 사례는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비실명 또는 익명 표기, 법원 판례는 언론사도 익명 처리)

공개할 만한 사생활이란

프라이버시권은 헌법 제17조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 특히 알권리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도 뉴스의 가치가 있으면 이를 보도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그 기준은 공공이익에 우선하는지, 공적인 물건지, 공적사항인지 등이다.

이해 부합하지 않는 일반인의 사생활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없이 공개하려면 그만큼 공익적 필요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탈북소년 00이 “올해는 외롭지 않아요”〉(조선일보, 2010.5.6): 2007년 할아버지와 탈북하여 남만에 정착한 12세 소년이었으나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생활, 재학중인 학교명, 북한에서 겪었던 과거사 등을 자세히 다뤄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사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고 소년의 보호자인 할아버지의 동의가 없었음, 언론중재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인정하여 1천5백만원 손해배상금 결정.

나도 모르게 TV에 나왔다면

초상, 음성, 성명도 언론에서 보도하려면 원칙적으로 동의



문승영씨의 인권포스터 '너, 나'가 상징하듯 너와 나는 한 획 차이에 불과하다. 인권은 그 작은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국가인권위 제공)

가 필요하다. 대개 자신도 모르게 길거리에서 찍힌 사진을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미니스커트가 유명이라며 길거리에서 한 여대생을 촬영한 사건, 빗꽃구경을 나온 직장인을 촬영한 사건, 무더운 여름날 음료수 컵을 들고 길을 걷는 젊은 여성 3인을 촬영한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사건은 모두 언론중재위에 재소된 사례다. 다음은 지난해 언론중재위가 처리한 조정사건이다.

〈집은 많은데 갈곳이 없네〉(국민일보, 2010.1.16): 마들버스를 기다리며 담배막에 있는 전단지지를 보고 있었을 뿐인데, 사진 동의 없이 이를 촬영해서 마치 하숙집을 구하지 못해 근심하고 있는 여대생인 것처럼 보도. 1백만원 배상 합의 성립.

〈소비패턴 바꾸는 5만원권〉(동아일보, 2010.9.20): 추석 연휴를 3일 앞두고 백화점에서 쇼핑중이었는데 사진 동의도 없이 촬영한 사진을 게재해 초상권이 침해되었음, 50만원 배상 합의 성립.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속임수를 쓰거나 익명처리와 음성변조 등 동의의 전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동의한 범위를 벗어난 형태의 사용도 마찬가지다.

〈공포의 동과리레〉(O○방송, 1998.1.13. 서늘고법 판결): 성악과 대학생 4명은 방송사에서 신세대들의 생기발랄하고, 재미있고, 단합된 모습의 신인성 원형회 모습을 취재하겠다고 해 수락했는데 실제 방송된 내용은 신인성 원형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조명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침해로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원, 방송사에 도합 1천6백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

〈못된 아이 매진기? 치료인가?〉(O○방송, 2009.5.19. 서울남부지법 판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있는 두 아이의 어머니는 이를 사회문제화하고 아이들의 치료를 돕겠다는 방송사의 요청으로 취재에 동의하여 보도했으나 8개월 후 2차례에 걸쳐 교양프로그램과 뉴스 프로그램에 일부 편집된 영상이 무단으로 방송됐다.

이에 대해 언론조정신청을 통해 5백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관련 자료를 완전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반년 뒤 뉴스 프로그램에 10초 정도 아이의 모습이 담긴 자료화면이 또 방송되어 소송 끝에 손해배상금으로 도합 5백만원 지급 판결.

공인의 초상 사용은 비교적 용인되는 편이지만 전혀 관련 없는 보도에 내보내면 안된다. 한 시사주간지가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해 8월부터 10월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연이어 내보냈다.

특히 8월에 발행된 잡지 표지에 김 전 대통령의 사진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진과 나란히 게재하여 북한이 오래 전부터 김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고 1심 법원은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4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범피자는 인권 없다

언론의 범죄보도에서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한 경우가 있다. 지난 2003년 살인사건을 보도한 18개 언론사가 손해배상을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언론의 〈빛속속 진동생 살해범 체포〉 기사 등은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단정적인 표현의 제목을 사용해 보도했다.

이후 살인범으로 기소된 형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언론조정신청을 했고 건당 평균 3백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공인이 아닌 범죄자나 피의자의 초상과 신원을 공개한 경우도 인격권 침해다. 범죄피해자나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성실 결사 횡천〉(포항MBC, 2010.3.5): 해설 단속원이 일일 대개 집이 어선을 취재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원의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없이 방송하여 초상권 침해. 언론중재위 2백50만원 손해배상 조정 합의.

〈인조 대학생 강도·강간범 검거〉(중부일보, 2010.3.19): 공인이 아닌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교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언론중재위원으로부터 시정권고.

자살보도에서도 공인이 아닌 경우 신원을 공개하거나 원인에 대한 추측성 보도도 주의가 필요하다.

〈모자가 숨진 새 밀린 생활고 비탄 자살추정〉(영남일보, 2010.7.16): 자살자의 성, 나이와 함께 주소지를 리 단위까지 적시하여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여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대학병원 교수 자살 왜?〉(대전일보, 2010.3.5): 개인적인 채무와 우울증 등이 자살원인이었으나 마치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것처럼 보도하여 언론중재위로부터 정정 보도와 함께 유족에게 1백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조정 성립.

기자의 외출타기를 넘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2007년 ‘방송과 인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사화사건 보도와 인권’이란 주제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당시 토론자로 나온 일선 현장기자는 “언론 보도는 태생적 속성인 감시와 비판 기능, 알권리 충족을 위해 거의 예외없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며 “공공성과 진실성(또는 상당성)이 위협성 조각사유지만 기자들은 사안마다 매 순간 외출타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따라서 “기자들의 외출타기를 기자들의 외로운 결단과 판단에 맡기자고 말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기자협회와 인권위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인권보도준칙 제정은 그 연장선이다.

앞으로 학계, 법조계, 그리고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모든 언론이 준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익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끝〉

주의해야 할 인권권 관련 보도 사례	
구분	사 례
당사자 동의 없이 프라이버시권 침해한 사례	<p>《탈북소년 OO이 “올해는 외롭지 않아요”》(조선일보, 2010.5.6):2007년 할아버지와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12세 소년이 부모 없이도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소년의 실명, 재학 중인 학교명, 북한에서 겪었던 과거사 등을 자세히 다룸으로써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사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고 소년의 보호자인 할아버지의 동의가 없었음. 언론중재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인정하여 1천5백만원 배상 결정.</p> <p>《임태장 살인사건》(OBS경인TV, 2010.3.8):방송에서 경찰이 임태장인 살인사건 피해자의 사체 발굴 장면을 보도하면서 고인의 생전 모습을 담은 사진과 가족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고, 옷가지와 커튼으로 싸여있는 사체의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어 유족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사생활이 침해되었음. 언론중재위는 보도 자체의 공익성(총악법칙의 재발 방지, 경각심 고취)은 인정되지만 사체 발굴 장면을 보도하면서 유족 측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하여 2백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하고 동일 방송 프로그램에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유감 표명하도록 결정.</p>
본인 동의 없는 초상권 침해 사례	<p>《잡은 말은데 갈곳이 없네》(국민일보, 2010.1.16):마술버스를 기다리며 뒷바닥에 있는 전단지를 보고 있었던 썸민인데 사진 등의 없이 이를 촬영해서 마치 허숙집을 구하지 못해 근심하고 있는 여대생인 것처럼 보도. 1백만원 배상 합의 성립.</p> <p>《출다 주워》(아시아투데이, 2010.11.29):본격적으로 겨울 추위가 시작된 날 아침 시민들이 두터운 목도리와 점퍼로 중무장을 하고 잔뜩 움츠린 채 출근하고 있다는 기사에 사진 동의도 없이 사진을 촬영해 보도하여 이를 본 직장에서 놀림감이 되었음. 50만원 배상 합의 성립.</p> <p>《소비피해면 바꾸는 5만원권》(동아일보, 2010.9.20):추석 연휴를 3일 앞두고 백화점에서 쇼핑중이었는데 사진 동의도 없이 촬영한 후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이 침해되었음. 50만원 배상 합의 성립.</p>
동의 과정에서 속임수를 쓰거나 동의범위를 벗어난 초상권 침해 사례	<p>《공포의 통과의례》(○○방송, 1998.1.13, 서울고법 판결):성악과 대학생 4명은 방송사에서 신세대들의 생기발랄하고, 재미있고, 단합된 모습의 신입생 환영회 모습을 취재하겠다고 해 수락했는데 실제 방송된 내용은 신입생 환영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조망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원, 방송사에 도합 1천9백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p> <p>《뫼턴 아이 매인거? 치료인가?》(○○방송, 2009.5.19, 서울남부지법 판결):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있는 두 아이의 어머니는 이를 사회문제화하고 아이들의 치료를 돕겠다는 방송사의 요청으로 취재에 동의하여 보도했으나 8개월 후 2차례에 걸쳐 교양프로그램과 뉴스 프로그램에 일부 편집된 영상이 무단으로 방송됐다. 이에대해 언론조정신청을 통해 6백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관련 자료를 원천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년 뒤 뉴스 프로그램에 10초 정도 아이의 모습이 담긴 자료화면이 또 방송되어 소송 끝에 손해배상금으로 도합 5백만원 지급 판결.</p>
법외보도와 관련된 인권권 침해 사례	<p>《2인조 대학생 강도 - 감간법 걸거》(중부 일보, 2010.3.19):공인이 아닌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교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p> <p>《선상 결사 횡전》(포항MBC, 2010.3.5):해상 단속반이 앞선 대개잡이 어선을 적발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선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없이 방송하여 초상권 침해. 언론중재위 2백50만원 손해배상 조정 합의.</p>
자살보도 관련 인권 침해 사례	<p>《모자가 숨진 채 발견 생황고 비관 자살추정》(영남일보, 2010.7.16):자살자의 성, 나이와 함께 주소지를 리 단위까지 적시하여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여 언론중재위 시정권고.</p> <p>《대학병립 교수 자살 왜?》(대전일보, 2010.3.5):개인적인 채무와 우울증 등이 자살원인이었으나 마치 의학물 레비트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것처럼 보도하여 언론중재위로부터 정정보도와 함께 유족측에 1백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조정 성립.</p>

《공동취재팀》

김성후 기자협회보 기자 kshoo@journalist.or.kr
박광우 국가인권위 홍보협력과 사무관 pkw@nhrc.go.kr
김언경 방송독립포럼 사무국장 true4731@naver.com

기자협회보

2011년 06월 09일
04면 (기획)

“언론사 인격권 예방 시스템 강화해야”

양재규 언론중재위 정책연구팀장

“공익적 가치가 있는 뉴스라고 해서 함부로 실명을 쓰거나 사진을 실어선 안됩니다.”
변호사인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장은 “사안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하지만 프라이버시, 초상·음성·성명권 등 인격권을 중시하는 게 최근 법원의 언론관련 판결 경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3년간 1천여 건이던 언론중재위 조정사건이 지난해 2천2백건을 넘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죠.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던 기사도 이제는 잘못됐을 따집니다.”

특히 국민들의 초상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상권을 침해받았다’는 제소가 해마다 소폭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신문에 실은 길거리 스킷치 사진이 문제가 되고, 방송사들이 쓰는

자료화면도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 방송사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과 관련해 문의가 많습니다. 인터넷매체가 TV 화면에 나온 방청객들의 사진을 캡처해 실고 있는데 ‘사전동의를 안 받고 내 얼굴을 실었다. 초상권 침해 아니냐’는 문의들이죠. 초상권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이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 팀장은 언론사 자체적으로 보도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들이 모르거나 인권을 무시해서 인격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취재와 기사 출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 언론사는 기자에게 손해배상액에 대해 구상을 하거나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언론사 차원에서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야지 기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그는 취재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무언을 추구하고자 하는가, 어떤 공익적 가치를 달성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취재팀〉

(16.9×13.0)cm

기자협회보

2011년 06월 09일
04면 (기획)

“언론, 개개인의 삶 너무 가볍게 다뤄”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취재원을 ‘나’라고 생각한다면 무시하거나 제3자를 보듯 건조하게 또는 시혜자 입장에서 쓰지는 않을 겁니다.”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카메라 앵글이나 기사에서 취재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물어낸다”며 “취재원을 기삿거리의 대상으로 한정짓지 말고 ‘우리와 같다’고 배려하는 자세가 기사를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의 낮은 인권 의식을 장애인 관련 기사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장애인의 날에만 관련 기사를 실는 것도 문제지만 ‘저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식으로 장애인을 비장애인과의 분리시키는 기사가 대부분이라는 것.

“언론이 개개인의 삶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삶은 우주만큼 무겁게 있습니다. 장애인이란 비장애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아니든 말이죠. 기자들은 이런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기자 스스로가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언론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기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큰 그림으로 세상을 보도할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요즘 언론이 기삿거리에 치중하면서 사건의 총체적인 문제는 짚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중하게 사건의 경우 누드 사진이나 명품 휘미 등 호기심 거리에 취재력을 집중하면서 사건의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호기심 거리를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기자들을 보고 안타까워했다고 했다.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든, 사명감으로 기사를 택했든 기자의 어깨에 우리 사회의 변화가 미려가 달려 있어요. 일반 국민들의 삶에 애정과 관심을 갖



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에 앞서는 기자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그는 기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잘못을 빨리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정하고 사과하면 끝난 일을 자존심을 내세워 키웁니다.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만큼 기자들의 태도도 변해야 합니다.”

〈공동취재팀〉

(16.9×13.0)cm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 빌딩 (을지로 1가 16번지)
전화 02-2125-9948 / 팩스 02-2125-9988
www.humanrights.go.kr



100-750 서울 중구 태평로 1가2번지 한국프레스센터 1303호
전화 02-737-2483, 팩스 02-738-1003
www.journalist.or.kr